

독일환경영향평가법

Gesetz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UVPG)

한글판

번역 고정희
2014.09.30.

독일환경영향평가법 한글판에 대하여

가) 원문은 독일연방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현행 **환경영향법[Gesetz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UVPG), 2010.02.24./2013.07.25.]**을 사용했다. 환경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문은 Juris GmbH (독일연방법률정보센터)에서 발행한 것이다. 연방법률공보지 (아래 참조)에 공포되었던 원문은 별도로 첨부하였다.

나) 환경영향평가는 독립적인 절차가 아니고 각 계획/프로그램의 수립 혹은 사업승인절차에 동반되는 행정 절차이므로 각 해당계획 혹은 사업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이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이 일차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다른 법의 해당조항과의 관계를 부단히 밝히고 있다.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 해당 조항을 역주에 간략히 요약하거나 전문을 번역하였다. 기타 별도의 역주는 필요치 않으나 간략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은 본문에 괄호 속에 주를 달아 별도로 표시했다. (예: “항공교통법 §12조 (1)항에 준하여 수립되는 확충계획이 항공교통법 §8조 (1)항과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상당히 벗어나는 경우. [공항건설에 대한 조항]”)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타법들은 아래와 같다:

법명		인용된 조항
국도계획법	Raumordnungsgesetz (ROG)	§9 조, §15 조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VwVfG)	§72 조 ~ 78 조
건설법전	Baugesetzbuch (BauGB)	§2 조, §13 조, §34 조, §35 조, §244 조
연방자연보호법	Bundesnaturschutzgesetz (BNatSchG)	§36 조
환경향소법	Umwelt-Rechtsbehelfsgesetz (UmwRG)	§3 조
연방고속도로법	Bundesstrassengesetz (BStG)	§16 조
연방수로법	Bundeswasserstrassengesetz (WaStrG)	§13 조
항공교통법	Luftverkehrsgesetz (LuftVG)	§6 조, §8 조, §12 조
연방광산법	Bundesberggesetz (BBergG)	§57a 조
연방유해물질방지법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BlmSchG)	§51a, 별첨 2
수자원경제법	Wasserhaushaltsgesetz (WHG)	§45h 조
에너지경제법	Energiewirtschaftsgesetz (EnWG)	§12e 조, §17a 조
네트워크설치가속법	Netzausbaubeschleunigungsgesetz (NABEG)	§§4 조, 5 조
방사선폐기물 처리장소선발에 관한 법	Standortauswahlgesetz (StandAG)	
순환경제법	Kreislaufwirtschaftsgesetz (KrWG)	
원자력법	Atomgesetz	

다) 독일 법조항의 명칭/표기법은 **파라그래프 (§)와 아티클 (Artikel)** 두 가지가 있다:

- **파라그래프 § (Paragraph)** : 일반적으로 모든 법, 계약 등의 조항을 §로 표시하며, 각 파라그래프는 다시 **항(Absatz, 단락), 문 (Satz), 번호와 문자**로 나뉘어 구분된다.
- **아티클 Artikel** : 국제법, 기본법, 공법, 유럽공동체의 법령, 지침 등에 적용된다. 독일법을 공포하는 공식지 **연방법률공보(BGBl)**에도 아티클을 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파라그래프 §를 적용하고 있으나 연방법률공보를 인용하였을 경우 원문에서 Artikel로 쓰고 있다. 이는 형식상의 구분이므로 본문에서는 둘 다 “조”로 번역하였다.

라) 연방법률공보 (Bundesgesetzblatt, BGBl)

연방법률공보는 법령공포를 위해 연방법무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공보公報. 독일기본법제82조 1항 1절에 의거 BGBl에 발표되지 않은 법은 효력이 없다. (본문의 역주1 참조)

그러므로 본 환경영향평가법 원문도 아래와 같이 연방법률공보를 출처로 명기하고 있으며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법의 공식명칭이다:

„2010년 2월 24일 (연방법률공보 I, 94쪽) 공포하고 2013년 7월 25일 제 10조 (연방법률공보 I, 2749쪽)에 의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

마) 참고문헌

법령/독일

아래 법령의 출처는 모두 Juris, Das Rechtsportal (연방법률정보센터)

- Raumordnungsgesetz (ROG)
- Verwaltungsverfahrensgesetz (VwVfG)
- Baugesetzbuch (BauGB)
- Bundesnaturschutzgesetz (BNatSchG)
- Umwelt-Rechtsbehelfsgesetz (UmwRG)
- Bundesstrassengesetz (BStG)
- Bundeswasserstrassengesetz (WaStrG)
- Luftverkehrsgesetz (LuftVG)
- Bundesberggesetz (BBergG)
-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BImSchG)
- Wasserhaushaltsgesetz (WHG)
- Energiewirtschaftsgesetz (EnWG)
- Netzausbaubeschleunigungsgesetz (NABEG)
- Standortauswahlgesetz (StandAG)
- Kreislaufwirtschaftsgesetz (KrWG)
- Atomgesetz

법령/한글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 11690 호, 2013.3.23., 타법개정],

기타

- 대한번역통역센터, 독일법률용어 약자 2013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제정일자: 1990년 2월 12일

전문 인용:

„2010년 2월 24일 (연방법률공보¹⁾ I, 94 쪽) 공포하고 2013년 7월 25일 제 10조 (연방법률공보 I, 2749 쪽)에 의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

현행법: 2010년 2월 24일 I 94 개정안에 의거 재편²⁾
2013년 7월 8일 I 734 제 10조에 의거 마지막으로 개정됨.³⁾

각주:

(+++ 1990년 2월 21일부터 문서화됨 +++)
(+++ 시행령은 1990년 2월 12일 I 205⁴⁾ 제 14조 2항 문장 2와 문장 3 참조⁵⁾ +++)
(+++ 유럽연합법에 대한 안내: EWGRL 337/85 (CELEX Nr: 31985L0337) 전환
EWGRL 337/85 (CELEX Nr: 31985L0337) vgl. Art. 2 G v. 17.8.2012 I 1726 +++)

본법은 1990년 2월 12일 연방대표회의⁶⁾의 동의를 받아 연방의회에서 제정하였으며 연방법률공보 I 205의 제 1조 [Artikel]⁷⁾로 공포되었다. 동 공보의 제 14조 (환경영향평가시행령) 1항 1절 1번에 의거하고 제 14조 (환경영향평가시행령) 2항 2절 및 3절에서 규정한 항목을 감안하여 1990년 8월 1일부로 효력을 발생한다.

목차

	제정/개정일
제1장 총칙	2010.02.24
제1조 목적	2010.02.24
제2조 개념	2013.01.21
제3조 적용범위	2013.01.21
제2장	
환경영향평가	2010.02.24
제1부	
환경영향평가의 제반조건	2010.02.24
제3a조 환경영향평가 의무여부 판단	2010.02.24

제3b조	사업이나 시설의 유형, 규모 및 용량에 의거한 환경영향평가 의무	2010.02.24
제3c조	개별사업별 환경영향평가 의무	2010.02.24
제3d조	(소멸)	2010.02.24
제3e조	환경영향평가 의무가 있는 사업의 변경이나 확장	2010.02.24
제3f조	환경영향평가의무가 있는 개발, 시험사업	2010.02.24
제4조	타법과의 관계	2010.02.24
제 2부		
절차		2010.02.24
제5조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	2013.04.08
제6조	사업시행자의 제출서류	2010.02.24
제7조	기관참여	2010.02.24
제8조	외국기관참여	2010.02.24
제9조	공공참여	2010.02.24
제9a조	외국 공공참여	2013.07.25
제9b조	국가간의 경계를 넘어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기관 및 공공참여	2010.02.24
제10조	기밀보호와 개인정보보호	2010.02.24
제11조	환경영향요약서	2010.02.24
제12조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2010.02.24
제13조	사전승인 및 부분허가	2010.02.24
제14조	여러 연방주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	2010.02.24

제3장

전략환경평가	2010.02.24
---------------	------------

제1부

전략환경평가의 조건	2010.02.24
------------	------------

제14a조	전략환경평가 의무여부의 확인	2010.02.24
제14b조	계획과 프로그램 수립과정에서 혹은 개별단위로 전략환경평가수립이 의무시 되어야 하는 경우	2010.02.24
제14c조	환경영향수용능력 평가 결과에 따른 전략환경평가의 의무	2010.08.11
제14d조	예외조항	2010.02.24

제 2부

전략환경평가절차	2010.02.24
----------	------------

제14e조	전략환경평가와 타법과의 관계	2010.02.24
제14f조	조사범위의 확정	2013.04.08
제14g조	환경보고서	2010.08.11
제14h조	기관참여	2010.02.24
제14i조	공공참여	2010.02.24
제14j조	국가 간의 기관 및 공공참여	2010.02.24
제14k조	최종 평가와 수렴	2010.02.24
제14l조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채택에 대한 공고	2010.02.24
제14m조	사후모니터링	2010.02.24
제14n조	공동절차	2010.02.24

제 4장

환경평가를 위한 전문법	2010.02.24
제15조 공항노선결정과 승인절차	2013.01.21
제16조 국토계획; 국토계획에 대한 적법성 검토절차	2010.02.24
제17조 건설기본계획의 수립	2010.02.24
제18조 광산법에 의거한 절차	2010.02.24
제19조 경지정리절차	2010.02.24
제19a조 환경생태계획과 전략환경평가	2010.02.24
제19b조 연방교통도로계획과 전략환경평가	2010.02.24

제 5장

전력시설을 위한 법 (별첨 1, 19 번)	2010.02.24
제20조 계획확정절차; 계획승인	2010.08.11
제21조 결정; 부칙	2013.04.08
제22조 절차	2010.02.24
제23조 벌금	2010.02.24

제 6장

최종규정	2010.02.24
제24조 행정규칙	2010.02.24
제24a조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	2010.02.24
제25조 경과규정	2013.01.21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법의 목적은, 일정한 공공 혹은 개인 사업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수립함에 있어 아래의 일관된 원칙에 의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1. 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기에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 평가하며,
2. 환경평가의 결과는,
 - a) 모든 기관에서 내리는 사업승인 결정,
 - b) 계획과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개정할 때,

가능한 한 조기에 감안되어야 한다.

제2조 정의

(1)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여하는 행정관리절차로서 독립적인 성격을 갖지 아니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다음과 같은 환경매체 및 보호자원에 미치는 직접, 간접적 영향을 조사하고 설명하며 평가한다:

1. 인간의 건강을 포함하여 인간, 동물, 식물 및 생물종다양성,
2. 토양, 물, 공기, 기후 및 경관의 아름다움
3. 문화유산 및 기타 물적 자산
4. 위의 보호 매체사이의 상호작용

환경영향평가에는 공공을 참여시킨다. 사업승인이 여러 절차를 거쳐 수행되는 경우 이 모든 절차에서 감안한 부문적 평가를 종합하여 총체적으로 평가한다.

(2) 사업이란,

1. 별첨 1의 규정에 따라
 - a) 기술시설의 설치, 건설과 운영,
 - b) 기타 시설의 건설,
 - c) 자연과 경관을 훼손하는 방안의 실시,
2. 개조 혹은 확장,
 - a) 기술시설의 입지, 성격 혹은 운영체제,
 - b) 기타 시설의 입지, 혹은 성격,
 - c) 기타 자연과 경관을 해치는 방안의 실시.

(3) 위의 (1)항 첫 문장에서 말하는 결정이란,

1. 기관에서 행하는 인증, 허가, 승인, 계획확정 등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제반의 행정적인 절차를 통한 결정을 말하며, 통보절차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2. 본법의 §§ 15 조와 16 조 (1)항에서 (3)항까지에서 말하는 선행계획⁸⁾에서의 노선결정 [고속도로, 항공노선] 및 제반결정,
3. 건설법전 § 10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개정 혹은 보완에 대한 결정으로서, 이 절차를 통해 별첨 1에 열거된 사업들의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건설법전 § 10 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확정도 별첨 1의 사업에 대한 계획확정절차를 대신한다.

(4) 전략환경평가는 계획과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비독립적인 절차이다. 계획과 프로그램은 기관, 정부에서 수립하거나, 법제정의 절차를 통해 수용된다.⁹⁾

위의 (1)항, 문장 2와 3은 전략환경평가에도 적용된다.

(5) 본 법에 의거한 계획과 프로그램은 독일연방법 혹은 유럽공동체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과 프로그램을 말한다. 각 해당 기관은 이들 계획과 프로그램을 규정에 따라 수립할 의무가

있다. 국방과 자연재해방제 및 국가재정계획이나 프로그램은 이에서 제외된다.

(6) 본법에서 말하는 공공이란 단일 혹은 다수의 개인과 법인 및 이들의 연합체를 말한다. 관련된 공공의 참여란 위의 (1)항 첫 째 문장과 (4)항에 해당하는 절차에 관여되거나 저촉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며 그들의 이익이 (3)항에 의거한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혹은 (5)항에 의한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저촉을 받는 경우이다; (3)항 혹은 (5)항에 의한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저촉을 받는 단체들과 환경보호단체도 이에 속한다.

제3조 적용범위

(1) 본법은 별첨 1에 열거한 사업에 적용된다. 연방정부는 연방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아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권한이 있다.

1. 사업의 유형과 규모 및 사업대상지의 성격으로 인해 현저한 환경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을 별첨 1에 지정할 수 있다.
2. 유럽연합의 디렉티브에 근거하여 별첨 1의 목록 중에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목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연방정부가 위의 권한을 행사할 경우, 동법내의 다른 관련 규정들과 연동관계로 인해 필요한 수정사항들을 목록 1의 사업에 적용시킬 수 있다. 이 권한행사로 인해 개정하는 법조항은 연방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방대표회의가 3주 이내에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1a) 본법은 농업, 임업, 어업, 에너지, 산업 (광산업 포함), 교통, 물질순환경제와 폐기물처리, 수자원이용, 통신정보, 관광 및 공간이용과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과 프로그램에도 해당된다. 본법 §§ 14b 조~§§ 14d 조에 근거하여 전략환경평가 혹은 사전환경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모든 계획과 프로그램의 목록은 별첨 3에 별도로 명시하였다. 연방정부는 연방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아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권한이 있다.

1. 유럽공동체에서 발령한 디렉티브를 구현하기 위해 별첨 3에 현저한 환경영향을 초래할 것이 예견되는, 평가 대상 계획과 프로그램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2. 유럽공동체에서 발령한 디렉티브를 감안하여 별첨 3에 지정한 계획과 프로그램의 목록 중에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목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2) 연방국방부는 국방을 위해 혹은 국가 간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방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와의 협의 하에 연방대표회의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도 본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방사업을 제외시키거나 혹은 본법에서 규정하는 승인조건 중 예외를 만들 수 있다. 다만 현저한 환경침해나 영향을 시종 감안하여야 한다. 그 외에 승인절차와 관련된 타법은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연방국방부는 연방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에게 1 항의 적용여부에 대해 매년 통보해야 한다.

제2장 환경영향평가

제1부 환경영향평가 전제조건

제3a조 환경영향평가 의무여부 판단

담당기관은 § 5 조에 의해 제출한 사업승인신청이나 사업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혹은 사업승인성에 대한 기타 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사업에 대한 적정 정보와 직접 조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법 §§ 3b 조에서 3f 조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 실시의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 § 3c 조에 의거한 사전환경성검토가 실시된 경우 연방과 각주에서 만든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정보를 공공에게 제공하여야 한다¹⁰); 환경영향평가가 불필요한 경우 이 사실을 또한 공고해야 한다. 이 결정 자체에는 별도로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 3c 에 의거한 개별적 사전환경성평가 결과에 기인하여 환경영향평가가 불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면, 재판과정에서 평가절차가 § 3c 의 규정을 준수했는가의 여부와 얻어진 결론에 대한 근거가 확실한지만을 검토한다.

제3b조 사업의 유형, 규모에 의거한 환경영향평가 의무

(1) 별첨 1 에 열거된 사업 중 해당조건을 충족시키면 환경영향평가의무가 성립된다. 사업이나 시설의 규모 혹은 용량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면 환경영향평가의 의무가 있다.

(2) 같은 맥락의 여러 사업이나 시설이 동시에 한 사업자 혹은 여러 사업자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 누적된 사업이나 시설의 규모가 기준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의무가 성립된다. 같은 누적조건이 성립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한 사업용지나 건축용지 내에 여러 시설이 세워지거나, 혹은 운영체계가 같거나 혹은 건축시설이 서로 연결되는 경우, 혹은
2. 기타 자연생태공간과 경관을 훼손하는 사업/시설이 한 공간 내에 계획되었으며,

위의 시설이나 사업들이 유사한 용도를 가질 때 이에 해당한다. 위의 문장 1 과 2 는 대상지별 사전환경성검토에서, 혹은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별첨 1 의 2 열의 기준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제3c조 개별 사업별 환경영향평가 의무

별첨 1 에서 일반적 사전환경성검토를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2 열], 담당기관이 별첨 2 의 기준에 비추어 실시한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 12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저한 환경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소규모 혹은 소용량의 사업/시설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가 실시된 경우, 적은 규모나 용량에도 불구하고, 대상지의 특별한 성격, 즉 별첨 2 의 2 번 규정에 근거하여 현저한 환경영향이 초래된다고 여겨지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의무가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시에는 사업자가 제시한 방지 및 저감방안에 의해 환경영향을 충분히 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일반적 사전환경성검토의 경우 이를 정당화하는 사업/시설 규모와 용량에 대한 검토기준이 초과되는지 감안한다. 기준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마다 § 3b 조 (2)항, 문장 1, 문장 2 및 (3)항의 기준이 적용된다. 사전환경성검토절차와 결과는 문서화한다.

제3d조 (소멸)¹¹⁾

제3e조 (환경영향평가의 의무가 있는 사업의 변경이나 확장)

(1) 환경영향평가의 의무가 있는 사업/시설을 변경 혹은 확장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 환경영향평가의무가 있다.

1. 사업/시설의 규모와 용량의 변경 혹은 확장으로 인해 별첨 1의 1 열에 명시된 기준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혹은
2. § 3c 조, 문장 1, 문장 3에 의거하여 실시한 사전환경성검토 결과, 규모와 용량의 변경 혹은 확장으로 인해 현저한 환경영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는 경우, 현행법에 의거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시설에 대해서 기존의 확장, 변경시설도 함께 평가한다.

(2) 별첨 1, 번호 18.1에서 18.8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설의 확장이나 별첨 1, 번호 18.8의 사업/시설을 변경할 때 현행의 평가기준을 도달하거나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의 (1)항 문장 2가 적용된다.

제3f조 환경영향평가의무가 있는 개발, 시험사업

(1) 별첨 1의 1 열에 지정된 사업/시설에 해당하지 않거나 혹은 새로운 기술과 공정의 개발을 위해 건설되는 실험 혹은 시범시설의 경우 이 시설이나 실험이 2년 이상 지속되지 않고, § 3c 조 1항에 의거,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환경성검토의 결과 현저한 환경영향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2) 별첨 1의 2 열에 지정된 사업/시설 중에서 개발 혹은 실험을 위한 사업/시설이라면 § 3c 조의 일반적 규정이 적용된다.

제4조 타법과의 관계

연방이나 연방주가 별도의 법이나 시행령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거나 그 법이 본법에서 설정한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본법이 적용된다. 본법보다 앞서가는 요구사항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2부 절차

제5조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

(1) 사업승인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자가 승인기관에 승인신청을 하거나, 혹은 승인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절차의 시작과 함께 사업자에게 § 6조에 의거하여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제출서류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조기에 자문한다; 이 때 § 14f 조 (3)항을 감안한다. 서류제출에 대한 자문을 위해 승인기관은 사업자와 관련기관과 함께 회의를 열어 필요한 서류의 내용과 분량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준다. 회의 중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범위, 방법론 및 평가절차실시를 위해 중요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와 관련 지역

[게마인데] 및, § 8 조 (1)항에서 따른 관련기관과 환경보호법 § 3 조 (1)항에 따른, 환경보호협회 및 기타 삼자를 참가시킬 수 있다. 승인기관이나 기타 참가기관이 § 6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서류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회의록은 승인기관에서 작성한다. 이로써 계획의 진행상황에 부합되는 제출서류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다.

(2) 승인기관은 위의 (1)항에 의거한 서류회의 이후에도 절차를 순조롭고 적절하게 진행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경우 사업자에게 지속적인 조언을 해 준다.

제6조 사업시행자의 제출서류

(1)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절차의 시작과 함께 환경영향정도를 평가하는 데 뒷받침이 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도면 및 기타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 문장 1 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서류들을 기일 내에 제출하여 기타 문서, 도면들과 함께 공람할 수 있게 한다.

(2) 위의 (1)항에서 말하고 있는 제출서류의 범위와 내용은 사업승인여부에 직접 관련되는 법률에 의거한다.¹²⁾ 해당 법률에서 구비서류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3)항과 (4)항이 적용된다.

(3) 위의 (1)항에서 말하고 있는 구비서류는 최소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 사업의 유형, 사업장 위치, 사업의 규모에 대한 묘사와 토지 소요면적에 대한 설명
2. 자연과 환경생태에 대한 침해정도 및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절감, 상쇄 혹은 상쇄가 불가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
3. 사업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지대한 환경피해에 대해 우선 일반 상식에 준하며, 그 다음 인증된 평가방식에 의거하여 묘사한다.
4. 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미치는 범위 내의 환경과 환경요소, 매체에 대하여 우선 일반 상식에 준하고 그 다음 인증된 평가방식에 의거하여 묘사하며, 부정적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가름 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영향권 내의 주민에 대한 설명을 첨부한다.
5. 사업자는 가능한 대안을 모두 설정하고, 환경영향의 관점에서 입지선정의 근거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

문장 1 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언어로 요약하여 첨부한다. 요약서는 사업으로 인해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지의 여부와, 환경영향의 정도를 제삼자들도 유추할 수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

(4) 문서나 서류에는 사업의 유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아래의 항목도 포함되어야 한다.

1. 적용된 기술과 공정의 중요한 특성
2.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폐기물, 폐수 등의 방출량과 유형, 수자원, 토양, 자연생태와 경관의 이용정도 및 사업으로 인해 지대한 환경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요인들에 대한 서술.
3. 정보수집의 과정에서 발생한 난관들, 예를 들어 기술부족 혹은 지식의 결여 등에 대한 설명

위의 (3)항 문장 2 에 의한 요약서는 위의 1, 2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5) 사업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1)에서 (4)항까지가 그에 준하여 적용된다.

제7조 기관참여

승인기관은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기관의 환경담당부서에게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 6 조에 의거하여 문서와 서류를 제공하며 의견을 받는다. 행정절차법 § 73 조 (3a) 항이 적용된다.¹³⁾

제8조 외국기관참여

(1) 대상사업으로 인해 인접국가의 환경 (§ 2 조 (1)항 문장 2)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나 인접국가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 승인기관은 해당국가의 담당기관에게 사업에 대해 문서와 도면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며, 일정 기간 내에 참여의사를 밝힐 것을 요청한다. 해당 국가가 담당기관을 지정하지 않으면 자연보호를 담당하는 최상위 기관에게 의사를 전달한다. 참여가 결정되면 사업승인기관은 해당 국가의 담당기관 및 해당국가에서 지정한 기타 기관들에게 § 9 조, (1a)항, 문장 1a, 2 번에서 명시하는 서류와 문서를 제공하고 참여의견을 요청한다. 그 시점은 § 7 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내 기관 참여와 동일하다. 행정절차법 § 73 조 3a 항이 이에 적용된다.

(2) 필요하다고 여겨지거나 인접국에서 이를 요구하는 경우 연방과 해당연방주의 최상위 기관은 일정하게 협의된 기간 내에 인접국과 자문회의를 열어 경계를 넘는 환경영향과 이를 방지하고 저감하는 방안을 의논한다.

(3) 승인기관은 인접국의 해당기관에게 승인여부에 대해 통보하며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의제기방법을 안내한다.
양국간에 상호협정과 동등의 원칙이 존재하는 경우 문서의 번역본을 첨부할 수 있다.

(4) 연방과 연방주 사이의 국제법조항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¹⁴⁾

제9조 공공참여¹⁵⁾

(1) 승인기관은 사업으로 초래되는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절차에 공공을 참여시켜야 한다. 공공은 참여절차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참여절차는 행정절차법 § 73 조 (3)항의 문장 1, (4)항에서 (10)항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사업자가 절차진행 중 § 6 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변경해도 이로 인해 환경영향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공공참여를 되풀이하지 않아도 된다.

(1a) 승인기관은 참여절차를 시작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공에게 알려야 한다:

1. 사업승인신청서, 사업계획도면 혹은 환경영향평가절차에 대한 사업자의 기타 행적,
2. § 3a 조에 의거하여 결정된 환경영향평가의무 여부 및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 8 조와 9a 조 에 의거하여 외국의 참여에 대한 결정 여부
3. 승인절차에 대한 정보 및 승인절차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타기관에 대한 안내. 승인기관 뿐 아니라 참여한 모든 기관에게 질문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참여기간과 의견제시기간에 대한 안내,
4. 사업승인 가능성에 대한 정보
5. 공람 서류의 종류
6. 공람 기간과 장소
7. 기타 공공참여절차에 대한 정보

(1b) 승인기관은 공공참여를 위해 아래와 같은 자료를 공개하여 공공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1. § 6 조에서 규정한 문서
2. 공공참여의 시점까지 승인기관에게 제출된 해당사업에 대한 여러 중요한 보고서와 전문가감정서들.

그 밖에 사업승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기타 서류와 문서와 공공참여가 시작된 이후에 제출된 자료 등은 연방과 해당연방주의 환경정보법에 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2) 승인기관은 행정절차법 § 74 조 (5)항 문장 2 를 적용하여 사업의 승인 혹은 거절여부를 공고한다. 또한 행정절차법 § 74 조 (4)항 문장 2 에 의거, 승인 혹은 거절에 대한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이의 제기에 대한 안내를 첨부하여 공개한다.¹⁶⁾

(3) 사업에 선행하는 절차 중의 공공참여는 위의 (1)항과 (2)항과는 달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1. 위의 (1a) 에서와 같이 사업승인절차를 공고하며,
2. (1b)의 서류와 문서들을 적절한 기간 내에 공람하고,
3.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공공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제공하며 [공청회 등],
4. 사업의 승인 혹은 거절여부와 그에 대한 사유와 근거를 공개한다.

제9a조 외국의 공공참여¹⁷⁾

(1) 계획된 사업이 국가 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커다란 환경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되는 경우, § 9 조 (1)항에 의거하여 이웃국가의 공공을 참여시킬 수 있다. 승인기관은 아래와 같이 행한다:

1. 이웃 국가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통보한다.
2. 담당 승인기관에 대한 정보와 § 9 조 (1)항 혹은 (3)항에 준한 공공참여의 절차와 방법을 안내한다.
3. § 9 조 (1)항에서 지정한 절차에 의해 지정된 기간 내에 모든 의견을 제출해야 하지만 특별한 민사적 사유에 근거한 것은 예외임을 알린다.
4. § 8 조 (3)항에 의거하여 결정된 사업 승인 혹은 거절의 여부와 이의 사유 및 근거, 이의제기절차 등을 이웃 국가의 공공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승인기관은 (1)항의 문장 1 에서 말하고 있는 공공참여절차에 있어 해당 이웃국가의 공공에게 행정절차법 §3a (2)항과는 달리 인터넷을 통한 의견제시를 허용한다. 이는 해당 이웃국가와 관계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만족시킨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2) 승인기관은 §6 조 (3)항의 문장 2 에 의거하거나 혹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경계를 침범하여 초래되는 지대한 환경영향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이웃국가와 관계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만족시킨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3) 다른 국제법조항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9b조 국가간의 경계를 넘어 영향을 미치는 이웃국가의 사업에 대한 기관 및 공공참여

다른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독일연방공화국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되는 경우, 독일의 해당 기관은 다른 국가의 승인기관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다. 이에 대한 자료는 사업의 유형과 국가 경계를 벗어나 초래하게 되는 환경영향을 묘사한 것이어야 한다. 계획절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다른 국가의 담당기관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그리고 위의 § 6 조 (3)항과 (4)항에 준하여 서류를 요청한다. 또한 § 7 조에 의거, 독일의 기타 참여기관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참여의견을 제출할 다른 국가의 담당기관과 참여기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는 독일의 참여기관들이 의견을 모아서 제시하기로 결정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

독일의 담당기관은 다른 국가의 담당기관에게 경계를 침범하는 환경영향에 대한 정보를 독일어로 번역해 줄 것을 요청한다.

(2) 독일의 담당기관은 환경침해를 범하는 국가로부터 얻은 정보를 독일의 침해지역의 공공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는 해당 이웃국가의 국가법에 의하여 공공참여가 필요하거나, 실제로 공공참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독일의 담당기관은 참여의견을 전달할 이웃국가의 담당기관과 참여기간에 대한 정보를 공공에게 제공한다. 또한 적절한 기간 동안 해당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3) § 8 조 (2)항과 (4)항 및 § 9 조 (2)항, § 9a 조 (3)항을 이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10조 기밀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기밀보호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은 본법에 의해 하등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1조 환경영향 요약서

담당기관은 §6 조의 제반서류를 바탕으로 하여 §§7~8 조의 기관참여의견과 §§9~9a 조의 공공참여의견을 수렴하여, 예측되는 환경영향, 특히 자연생태기능과 경관에 대한 침해 정도와, 이를 회피 혹은 저감, 상쇄 및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요약한다. 담당기관이 스스로 조사한 항목이 있으면 이 역시 수렴한다. 요약서는 가능한 한 §9 조 (3)항 문장 1에 의한 공청 혹은 공람이 완료된 후 한 달 내에 작성하되, 승인심사서의 일환으로 작성할 수 있다. 승인심사서에는 승인 혹은 거절에 대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의 회피, 저감, 상쇄 및 대체 방안도 서술한다.

제12조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승인기관은 §11 조에서 지정하는 요약서를 근거로 하여 사업이 미치는 환경영향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그 결과를 수렴해야 한다. 이는 본 법의 §1 조와 2 조 (1)항 문장 2와 문장 4에서 의미하는 효율적인 환경사전관리의 목표에 부합된다.

제13조 사전승인 및 부분허가

(1) 임시승인, 1차 부분승인 혹은 1차 부분허가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후에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계획절차에 따라 임시승인, 부분승인 혹은 부분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전체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한 환경영향을 평가한다. §5 조에 의거하여 제반서류에 대한 안내를 할 때와 §6 조에 의거하여 서류를 제출할 때 이를 감안해야 한다.

(2) 재차 부분승인 혹은 재차부분허가를 내릴 때는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에 국한시킨다. 위의 (1)을 준하여 적용시킨다.

제14조 여러 연방주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

(1) 여러 연방주의 해당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해당 연방주들 중에서 대표가 되는 기관을 선정한다. 대표기관은 최소한 §§3a 조, 5 조 및 8 조 (1)항과 (3)항 및 §9 조와 11 조에 의거한 사항을 담당한다. 해당 연방주들은 대표기관에게 §6 조, 7 조 및 9 조에 의거한 사항도 위임할 수 있다. 대표기관은 대상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각 기관들과 자연보호기관과의 협의 하에 과제를 수행한다. 원자력법에 저촉되는 경우나 위의 해당 기관 중에 연방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원자력법에 의거한 승인기관이 대표기관이 된다. 이 때 대표기관은 §§3a 조, 5 조에서 8 조 (1)항까지, 그리고 (3)항 및 §9, 9a 조와 11 조를 담당한다.

(2) 승인기관들은 §11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약서를 바탕으로 하여 사업이 미치는 환경영향을 종합평가하고 §12 조에 의거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때 그 결과를 감안한다. 대표기관은 각 승인기관들의 순조로운 협업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장 전략환경평가

제1부 전략환경평가의 조건

제14a조 전략환경평가 의무여부의 확인

(1) 담당기관은 §§14b~14d 에 의거하여 전략환경평가 수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위의 (1)에 의거한 전략환경평가수립의 의무가 확인되었을 시, 연방과 주에서 지침을 정한 대로 환경정보를 개방하여야 한다. 전략환경평가의 수립이 불필요할 경우 그 사실과 그에 대한 사유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수립여부가 확정되면 그 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의문에 붙이지 않는다.

제14b조 특정한 부문계획과 부문프로그램에 대해 개별단위로 전략환경평가수립이 의무시 되는 경우

(1) 다음과 같은 경우 전략환경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1. 별첨 3, 번호 1에 열거된 계획과 프로그램
2. 별첨 3, 번호 2에 열거된 계획과 프로그램 중 별첨 1에 열거된 사업이나, 혹은 주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 혹은 개별사업단위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하는 사업들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세우는 계획을 수립할 경우.

(2) 위의 (1)항에 해당되지 않는 계획이나 프로그램으로서, 별첨 1에 열거된 사업이나 기타 사업들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세우며, 위의 (4)항에 의거한 개별적 사전환경성검토의 결과에 따라 현저한 환경영향이 초래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한다. 건설법전 §34 조 (4)항과 §35 조 (6)항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¹⁸⁾

(3) 계획이나 프로그램은 후에 개발사업의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히 사업이나 시설의 수요, 규모, 위치, 성격, 운영조건, 자원소모량 등에 대한 기본 틀을 준비한다.

(4) 개별적 사전환경성검토에 의해 전략환경평가의 실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경우, 담당기관은 별첨 4에 열거된 기준을 근거로 하여 해당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는 아래의 §14k (2)항에 의거한 평가절차에 감안해야 한다.

사전환경성검토시 환경영향의 회피, 저감 혹은 상쇄가 불가능한지의 여부를 살핀다. §14h 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관들을 문장 1에 의거한 사전환경성검토에 참여시킨다. 사전환경성검토과정과 그 결과는 기록으로 남긴다.

제14c조 환경영향수용능력 평가 결과에 의한 전략환경평가 의무 **[자연보호법]**

연방자연보호법 §36 조 문장 1의 2번에 의해 환경영향수용능력에 관한 평가를 거쳐야 하는 계획과 프로그램의 경우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해야 한다.¹⁹⁾

제14d조 전략환경평가 예외 규정

§14b (1)항과 §14c에서 규정한 계획과 프로그램이 근소하게 변경되거나, 대상지가 소규모의 지역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14b (4)항에 의거하여 실시한 사전환경성검토에서 현저한 환경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한다. 건설법전 §§13 조, 13a 조²⁰⁾ 및 국토계획법 §9 조 (2)항²¹⁾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부 **전략환경평가 절차**

제14e조 전략환경평가와 타법과의 관계

아래 §19 조와 무관하게 연방이나 연방주가 별도의 법이나 시행령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거나 본법에서 설정한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본법이 적용된다. 본법보다

앞서가는 요구사항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14f 조 조사범위의 확정

(1) 전략환경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조사범위를 정하고 아래의 §14g 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고서의 규모와 상세함의 정도를 확정한다.

(2) 조사범위 및 환경보고서의 내용, 규모와 상세함의 정도는 §2 조 (4)항, §2 조 (1)항 및 계획과 프로그램의 수립이나 개정절차에 기준이 되는 해당법령들에 의해 결정된다. 환경보고서는 적절한 범위²²⁾ 내에서 조사한 정보들을 포함해야 하며, 최신의 지식수준과 여론 및 인증된 평가방법을 감안한다. 환경보고서는 계획과 프로그램의 내용과 상세도 및 결정과정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서술을 포함한다.²³⁾

(3) 대상 계획과 프로그램이 다단계 절차의 일부로 이루어진다면, 중복평가를 피하기 위해 각 계획단계에서 어떤 환경영향이 핵심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는 조사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 때 환경영향의 유형과 규모, 전문적 요구 및 계획과 프로그램의 내용과 결정대상 등을 감안한다. 계획과 프로그램은 다음 단계의 계획이나 사업승인계획에서는 이미 조사된 것을 재조사하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발생할 지대한 환경영향만을 조사하고 심화시키는데 국한한다. [중복평가금지]

(4) 전략환경평가의 조사범위와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할 때는 대상계획이나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는 환경 및 건강관련 기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평가담당기관은 참여기관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회의나 서면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문가, 관련 지역 [게마인데] 및 아래 §14j 조 (1)항에서 지정하고 있는 관련기관, 환경향소법 §3 조에 의거 공인된 환경연합과 단체 및 기타 제삼자들을 참여시킨다.²⁴⁾ 참여기관들은 환경보고서작성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담당기관에 전달한다.

제 14g 조 환경보고서

(1) 담당기관은 절차 초기에 환경보고서를 작성한다. 환경보고서를 통해 대상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실현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환경영향의 예측과 더불어 적절한 대안을 개발하고 이를 설명하고 평가한다.

(2) 위의 (1)항에 의한 환경보고서는 §14f 에서 지정한 바와 같이 아래와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 대상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요약 및 타계획,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2. 해당계획이나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중요한 환경보호목표를 서술하고 해당 계획과 프로그램이 환경목표 및 기타 환경요소들을 어떤 방식으로 감안하고 있는지를 밝힌다.
3. 대상지의 환경적 특성과 현황 및 해당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의 환경상태 예측,
4. 해당 계획이나 프로그램과 관련된 중요한 환경문제의 현황, 특히 별첨 4 의 번호 2.6 에서 지정한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과의 관련성,

5. 위의 §2 조 (4)항 문장 2 에 준하고 §2 조 (1)항 문장 2 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에 대한 예측,
6.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실현될 때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회피하거나, 저감 혹은 최대한 상쇄할 수 있는 방안 서술,
7. 정보수집과정에서 겪은 난관, 예를 들어 아직 미흡한 환경정보나 결여된 기술 혹은 지식,
8. 대안들을 설정한 근거 및 환경평가과정에 대한 간략한 서술,
9. 아래의 §14m 조에 의거하여 개발한 사후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묘사,

위의 사항들은 해당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의 여부와 영향의 정도 등을 제삼자가 파악할 수 있게 서술해야 한다. 일반인과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작성한 요약서를 첨부한다.

(3) 담당기관은 위의 §§1 조와 2 조 (4)항 문장 2 에 준하고 §2 조 (1)항 문장 2 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환경사전관리의 의미에서 해당 계획과 프로그램의 환경영향을 환경보고서에서 임시 평가한다.

(4) 담당기관이 다른 업무절차를 통해 얻은 지식과 정보 역시 목적에 부합되고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환경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4h조 기관참여

담당기관은 해당 계획이나 프로그램과 저촉되는 환경 및 건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제 기관들에게 계획 혹은 프로그램의 도면초안과 환경보고서의 초안을 제공하고 이들의 의견을 모은다. 담당기관은 적절한 의견제시 기간을 제공하되 최소한 한 달의 시간을 준다.

제14i조 공공참여

(1) 공공참여시에는 아래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위의 §9 조 (1)항에서 (1b)항까지를 적용시킨다.

(2) 계획 혹은 프로그램의 도면초안과 환경보고서의 초안 및 담당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기타 제반 서류들을 초기에 적정기간 동안 공람한다. 공람장소는 해당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담당기관이 결정하되, 공공참여가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3) 계획 혹은 프로그램의 도면초안과 환경보고서의 초안에 대해서 공공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담당기관은 적절한 참여기간을 제공하되 최소한 한 달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해당연방법에서 그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제14j조 (국가 간의 기관 및 공공참여)

(1) 국가 간의 경계를 초월하는 기관참여의 경우 §8 조에 따라 행한다. 다른 국가의 담당기관에게 통보할 때 계획 혹은 프로그램의 도면초안과 환경보고서의 초안을 전달한다. 담당기관은 다른

국가의 해당기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기에 적절한 기간을 제시한다. 해당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통과되었을 경우 이 사실을 §14i 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웃 국가의 해당기관에게 통보한다.

(2) 국가 간의 경계를 초월하는 공공참여의 경우 §9a 조에 따라 행한다. 다른 국가의 공공은 §14i 조 (1)항과 (3)항에 따라 참여시킨다.

(3) 다른 국가의 계획과 프로그램에 대해 독일의 기관과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는 §9b 조에 의거하여 행한다.

제14k조 최종 평가와 수렴

(1) 기관참여와 공공참여절차가 완료되면 담당기관은 위의 §§14h 조에서 14j 조 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취해진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보고서를 검토한다. 검토 시에는 §14g (3)항의 규정을 기준으로 삼는다.

(2) 위의 (1)에 의해 검토된 내용은 해당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수립, 보완하는 데 수렴한다.

제14l조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채택에 대한 공고

(1)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채택되었을 경우 이 사실을 공고한다.²⁵⁾ 거부되었을 경우 이 사실을 공고할 수 있다.

(2)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채택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정보를 공람한다:

1. 채택된 계획이나 프로그램 도면,
2. 계획이나 프로그램에 어떻게 환경적 측면이 감안되었는지에 대한 요약서와 함께 §14g 조에 의거하여 환경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으며, §§ 14h 조에서 14j 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 기관 및 공공의견을 수렴하였다는 사실을 요약한다. 또한 계획이나 프로그램과 대안 사이에서 선정된 안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요약한다. 또한,
3. §14m 조에 따라 개발한 사후모니터링 방안을 요약한다.

제14m조 사후모니터링

(1)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구현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대한 환경영향은 모니터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다.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채택됨과 함께 환경보고서에서 개발한 모니터링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

(2) 연방이나 연방주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전략환경평가를 담당한 기관에서 모니터링도 담당한다.

(3) 위의 (2)항에 모든 기관들은 담당기관이 요구하면 (1)항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모니터링 결과는 연방과 연방주가 환경정보개방을 위해 제정한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공공에게 개방하며 위의 §14h 조에서 지정한 기관들에게 개방한다. 또한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개정 보완할 때 이를 감안해야 한다.

(5) 위의 (1)항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기존하는 모니터링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정보출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 14g 조 4 항을 적용한다.

제14n조 공동절차

전략환경평가는 기타 환경영향평가절차와 연계될 수 있다.

제 4장 환경평가를 위한 법규정들

제15조 노선결정 [도로, 수로, 항공로]과 비행장

(1) 연방고속도로법 §16 조 (1)항²⁶⁾ 및 연방수로법 §13 조 (1)항²⁷⁾에 의거하거나, 별첨 1 에 열거한 사업승인계획에 앞서 항공법 §6 조 (1)항²⁸⁾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노선계획 [선행계획] 등은 각 계획의 절차와 부합되는 환경영향을 평가한다. 단 국토계획수립과정에서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었고 다음 문장 3 의 조건이 만족되며 아래 (2)항과 (3)항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노선계획의 환경영향평가에는 모든 노선의 경우수를 포함시켜야 한다.

(2) 위의 §9 조 (3)항의 규정과는 달리 노선계획의 공공참여에 필요한, 위의 §6 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와 도면은 사업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게마인데]에서 직접 공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게마인데는 관보 등을 통해 공람사실을 공고한다. 열람기간이 끝나고 2 주후까지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결정사항은 다시금 각 고장의 관보에 공개한다.

(3) 항공법 §6 조 (1)항에 의하여 수립되는 선행계획절차는 위의 (2)항 문장 1 이 적용된다. 그 밖에 위의 §9 조 3 항의 규정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다음 단계에 따르는 사업승인이나 허가절차에서는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환경영향에 국한시켜 평가한다.

(5) 연방고속도로법 §16 조 (1)항 및 연방수로법 §13 조 (1)항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노선계획은 그 다음 허가단계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만 재고再考될 수 있다.

제16조 국토계획: 국토계획에 대한 적법성 검토절차²⁹⁾

(1) 별첨 1 에 열거된 사업들은 본법의 §§3b 조와 3c 조에 의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들이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 의거한 사전공간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 §15 조 (1)항 문장 3³⁰⁾에 의거하여 입지대안을 포함하여 각 계획의 진행상황에 부합되도록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단 각 연방주州법에 의해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경우는 주의법을 따른다.

(2) 다음 단계로 수행되는 건설허가단계에서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영향이나 기타 현저한 환경훼손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국토계획법 §15 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국토계획에 대한 적정성평가의 결과는 다음 단계로 실시하는 사업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경우에만 재고再考될 수 있다.

(4) 본법에 의거하여 국토계획의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해야하는 경우, 환경평가와 사후모니터링은 국토계획법의 규정을 따른다.³¹⁾

제17조 건설기본계획의 수립

(1) 본법 §2 조 (3)항 3 번, 특히 별첨 1 의 18.1 에서 18.9 까지 열거된 사업에 대해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혹은 보완할 경우, 개별적 사전환경성검토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본법 §2 조 (1)항 문장 1 에서 3 까지를 적용하며, §3 조에서 3f 조까지의 규정과 건설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건설법전의 환경평가규정은 본법에 준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건설법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평가를 실시하면 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³²⁾

(2) 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혹은 보완 절차에서 본법에 의거하여 전략환경평가의 의무가 성립될 때는 환경평가 및 사후모니터링 모두 건설법전의 규정을 따른다.

(3) 지구단위계획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고 다음의 허가단계에서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할 경우, 허가단계에서는 추가적으로 발생하거나 기타 현저한 환경영향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제18조 광산법에 의거한 절차

별첨 1 의 광산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연방광산법의 계획확정절차³³⁾를 거치는 과정에서 본법의 §2 조 (1)항 문장 1 에서 3 까지의 조항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본법의 §5 조에서 14 조까지의 조항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19조 경지정리절차

경지정리법 §41 조에 의거하여 경작로 및 수로계획과 이를 동반하는 환경생태계획의 계획확정절차를 실시할 때 본 법 §9 조 3 항에 따라 공공의견을 수렴한다.

제19a조 환경생태계획과 전략환경평가

환경생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는 각 연방주에서 정한 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19b조 연방교통도로계획과 전략환경평가

(1) 별첨 3의 1.1 번에 명시된 공급계획들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는 같은 항목의 다른 계획과 프로그램을 수립, 변경하는 절차 중 실시한 전략환경평가에서 감안되지 않은 현저한 환경영향에 한해서만 실시한다.

(2) 별첨 3의 1.1 번에 해당하는 연방차원의 도로교통계획에 대한 환경보고서에는 계획 혹은 프로그램의 목표와 지리적 대상지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망과 교통수단에 대한 대안을 조사하고 이를 설명하며 평가해야 한다.

(3) 연방교통건설·도시계획부는 연방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와의 협의 하에 별첨 3의 1.1 번에 해당하는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이 때 연방대표회의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다.

1. 본법 §14f조에 의거하여 도로교통계획에 대한 환경영향의 조사범위설정에 대한 세부절차,
2. 본법 §14g조에 의거하여 작성하는 도로교통계획에 대한 환경보고서의 내용, 작성요령 및 상세한 평가절차,
3. 본법 §14h조에서 14j조에 의거하여 도로교통계획에 대한 기관과 공공참여절차를 실시할 때 전자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할 것인지의 여부,
4. 본법 14i조에 의거하여 계획 채택 사실을 공고할 때 전자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하는 방안,
5. 본법 14m조에 의거한 사후모니터링의 유형과 기간 및 결과의 활용.

(4) 연방교통건설·도시계획부는 연방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와의 협의 하에 연방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각 연방주가 교통프로젝트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법 별첨 3의 1.1 번에 해당하는 계획과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와 정보를 전략환경평가 시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 권한이 있다.

제5장

전력시설 (별첨 1, 19번)

제20조 계획확정절차³⁴⁾; 계획승인³⁵⁾

(1) 별첨 1의 19.3에서 19.9에 열거한 사업들과 사업변경은 본법 §93b 조에서 3f 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의 의무가 있는 경우 승인기관이 계획확정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의 의무가 없는 계획이나 프로그램은 계획허가절차를 거친다. 소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허가가 불필요하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은 §3c 조에 의거한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규모와 용량에 있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행정절차법 §74 조 (7)항 문장 2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이다; 본법의 §3b 조 (2)항과 (3)항은 준하여 적용된다. 수질오염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수송하기 위한 관의 설치, 운영 및 변경과 해당 사업체의 개축 등은 위의 문장 2에서

말하는 소규모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변경정도가 극히 미미한 경우는 예외이다.

제21조 결정; 부칙

(1)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해서만 계획을 확정시킬 수 있다.

1. 공공의 이익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 확실 할 때, 특히
 - a) 본법 §2조 (1)항 문장2에서 명시한 환경매체가 위협당하지 않고,
 - b) 환경매체에 대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기술적 방안과 운영관리방안이 최신 기술수준에 부합될 때,
2. 환경에 대한 법률과 기타 사업수행에 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때,
3. 국토계획의 목적에 부합되고 그 원칙과 기타 조건이 충분히 감안되었다고 판단될 때,
4. 근로보호의 기준이 충족되었을 때

별첨 1 의 19.3 번의 사업에 대해서는 수질이 나빠질 염려가 없을 때 계획이 확정될 수 있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혹은 사업이 특정한 공법公法에 위배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승인기간을 정하여 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 계획확정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도 조건과 승인기간을 지정, 변경 내지는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

(3) 계획허가절차에도 위의 (1), (2) 항이 적용된다.

(4) 연방정부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방대표회의의 동의를 거쳐 위의 (1)항, 문장 1 의 1 번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 조례 등을 발령할 수 있다.

1. 환경매체에 대한 영향을 사전방지하기 위한 기술기준에 맞는 건설과 그 운영 및 관리 방안,
2. 담당기관과 사업자 및 제삼자의 아래 항목에 대한 의무,
 - a) 기관과 공공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
 - b) 기관에게 제반 서류 제출의 의무,
 - c) 기관이 기술적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와 그에 필요한 인력과 기타 기술적 도구를 제공할 의무,
- 2a. 기관의 권한,
 - a) 기술정보수집과 평가 수행의 권한,
 - b) 해당 업체, 기관 등을 업무시간 중에 방문할 수 있는 권한,
 - c)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주거공간과 업무 외 시간에도 구내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
 - d) 위의 b)와 c)에 해당하는 경우 업체와 직접 연계되지 않은 인접 공간이나 시설에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권한.
3. 전문가, 전문단체 및 허가된 감리기관 등에 의한 사업계획 검토 및 전문가, 전문단체 및 허가된 감리기관의 자격 및 인증절차,
4. 기존하는 사업의 갱신을 통해 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규정,
5. §20조에 의거, 계획확정절차와 허가절차가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공고,
6. 기타 개별 사항에 대한 기관의 권한.

조례나 법령을 통해 기술위원회 설립을 규정할 수 있다. 기술위원회는 연방정부와 연방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의 기술자문의 역할을 맡아 그들의 권한 내에서 최신 기술에 부합되고 보호목표에 맞는 기준을 정한다. 연방유해물질방지법 §51a조 1항에 의거하여 조직된 시설안전기준위원회와 협의한다.³⁶⁾ 기술위원회는 해당 연방기관의 대표들과, 연방주의 기관들, 전문가, 전문기관, 공인감리업체, 연구기관 및 전력시설의 생산업체와 판매업체 들을 초대한다.

연방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는 기술지침을 연방관보에 공고할 수 있다. 조례에는 별첨1의 19.3번에서 말하는 수질 오염물질을 지정할 수 있다. 주거의 불가침에 대한 기본법은 (기본법 제 13조) 위의 2a c)에 의해 제한된다.

(5) 연방정부는 계획확정절차나 계획허가가 불필요한 배관시설에 대해 수자원경제법 §23 조 (2)항에 따라 관계자들과 청문회를 열고 연방대표회의의 인준을 받아 조례를 만들어,

1. 신고의 의무를 규정하고,

2. 위의 (4)항 1 번에서 4 번, 6 번 혹은 (4)항 문장 2 와 문장 7 에 준하는 기준들을 정한다.

[문장2; “조례나 법령을 통해 기술위원회 설립을 규정할 수 있다..” / 문장7; “조례에는 별첨1의 19.3번에서 말하는 수질 오염물질을 지정할 수 있다.”]

(6) 연방정부는 연방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본법의 제 5 장과 위의 (4)항과 (5)항에 근거한 국방시설에 관한 조례의 발령은 연방기관의 권한임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 절차

계획확정절차 및 계획허가절차는 행정절차법 §§ 72조 에서 78조에 준하여 실시한다. 연방정부는 연방대표회의의 인준을 얻어 계획확정절차에 필요한 신청서류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만들어 규정할 수 있다.

제 23조 과태료규정

(1) 의도적인 혹은 과실에 의한 아래의 행위는 위법이다.

1. §20조 (1)항에 의거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20조 (2)항 문장1에 의해 사업을 집행할 경우,

2. §21조 (2)항에 의해 내려진 확정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위반할 때,

3.

a) §21조 (4)항 문장1의 1, 3, 4 번 혹은 6번, (5)항 2번과의 연계 하에 혹은,

b) §21조 (4)항 문장1의 2번, (5)항 2번과의 연계, 혹은 §21조 (4)항, 문장1, 1번에서 5번 혹은 (5)항 1번

혹은 이와 유사한 규정들을 위반하고 위의 조항들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조례가 과태료규정을 포함할 때.

(2) 위의 (1)항 3 번 b 에 해당하는 규정위반은 최대한 2 만 유로의 과태료를, 기타의 경우에는 최대 5 만유로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제 6장 최종 규정

제24조 (행정규칙)

연방정부는 연방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 본법 §§1조와 12조에서 말하고 있는 환경영향의 조사, 설명 및 평가 (§ 2조 (1)항 문장2)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2. 본법 §5조에 의한 제반서류에 대한 안내원칙
3. 본법 §11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서술 및 §12조에 의한 평가기본원칙,
4. 본법 §3c조에 의해 실시되는 개별적 사전환경성검토 및 별첨 2에 열거된 기준들에 대한 원칙,
5. 본법 §14g조에 의거한 환경보고서 작성원칙,
6. 본법 §14m조에 의거한 사후모니터링원칙.

제24a조 행정절차에 대한 규정

본법의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행정절차법의 규정들은 각 연방주법에 의해서 그리고 §§4 조와 14e 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

제25조 경과규정

(1) 사업승인결정과 관련된 절차 (§2 조 (1)항 문장 1 과 3 항)와 2001 년 8 월 3 일 이전에 시작된 절차는 본법의 규정에 따라 완료한다.

위의 사업절차는 유럽연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대한 지침 및 오염방지 및 오염등록에 관한 통합법 및 2001 년 7 월 27 일에 발령한 환경보호에 관한 기타 유럽연합디렉티브들 (연방법률공보 I 1950)의 규정들이 지금과는 달리 규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들을 적용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001 년 8 월 3 일 이전에 사업절차를 밟아 공고하였을 경우 위의 첫 문장이 적용된다.

(2) 위의 (1)항과는 달리 아래의 경우에는 2001 년 8 월 3 일 이전에 유효하던 법이 계속 적용된다.

1. 사업자가 승인신청서류를 1999 년 3 월 14 일 이전에 해당승인기관에 제출하였고 그에 사업의 유형과 규모 및 입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사업승인신청서류의 제반 조건에 대한 기타 규정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혹은
2. 1999 년 3 월 14 일 이전에 기타 다른 방법으로 §2 조 (1)항 문장 1 과 (3)항의 절차가 이미 시작된 경우; 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른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법이 적용된다.

2001 년 8 월 3 일 이전에 유효하던 법 §3 조에 딸린 별첨에 속하지 않으나 1985 년 6 월 27 일 공공 및 개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발령한 유럽 디렉티브 85/337/EEC 의 별첨 II 에 열거된 사업의 경우에, 승인기관이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사업의 종류와 규모로 인해 현저한 환경영향이 초래될 것이라 판단하면 2001 년 8 월 3 일 이전에 유효하던 법이 적용된다. 위의 (1)항 2 번과 3 번이 이에 준하여 적용된다.

(3) 위의 (1)항, (2)항과는 달리 §2 조 (1)항 문장 1 과 (3)항의 절차가 1988 년 7 월 3 일 이전에 시작된 경우에는 본법과 2001 년 8 월 3 일 까지 유효하던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위의 (1)과 (2)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의무가 성립되었으나 §17 조에 의거하여 건설법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건설법전 § 244 조³⁷⁾가 적용된다.

(5) 소멸

(6) 별첨 1의 19.3 번에서 열거한 배관시설의 설치, 운영 및 변경에 대한 절차가 2002년 6월 25일 이전에 시작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지침에 관한 법과 오염방지 및 오염등록에 관한 통합법, 그리고 2001년 7월 27일에 발령한 기타 유럽연합의 환경보호에 관한 디렉티브들 (연방법률공보 I 1950)에 의거하여 완료한다.

(6a) 2010년 2월 28일까지 유효한 수자원경제법 §19a (1)항 문장 1에 의거하여 수질오염물질용 배관시설에 내려진 시설허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 경우, §20 조, (1)항에 의한 계획확정으로 여겨진다. 기타의 경우 §20 조 (2)항에 의해 내려진 사업허가가 계속 유효하다; §21 조 (2)항과 (4)항도 이에 준한다.

(7) 소멸

(8) 제 3부 (전략환경평가)의 규정들은 2005년 6월 29일 이후에 준비가 시작되고 2004년 7월 20일 이후에 공식적으로 절차가 계획이나 프로그램은 본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완료한다.

(9) 2004년 7월 21일 이전에 공식적으로 준비가 시작되고 2006년 7월 20일 이후에 채택되거나 조례제정절차 중에 있는 계획이나 프로그램은 본법 제 3부의 규정이 적용된다. 본법 §16 조 (4)항과 국토계획법 §28 조 (1)항과 (3)항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10) §16 조 (1)항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2010년 3월 1일 이전에 시작된 절차들은 2010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법이 적용된다. 공공참여가 이미 실시되었으면 본법 §9 조에 의거한 공공참여는 추가적인 환경영향이나 현저한 기타 환경영향이 예상되지 않는 한 다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기관참여절차가 이미 실시되었으면 현저한 환경영향에 대한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한 §§7 조와 조에 의한 기관참여를 재실시하지 않는다.

(11) 2005년 6월 25일 이전에 시작되었고, 본법 §2 조 (1)항 문장 1과 (3)항에 의거하여 사업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라면 2006년 12월 15일부로 효력을 발생한 법의 규정에 의해 절차를 완료한다. 다만 2005년 6월 25일 이전에 이미 공고된 절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의 첫 문장과는 달리 별첨 1의 국방사업들에 대해서는 본법 §3 조 (2)항에서 제정하는 조례가 발령할 때까지 2006년 12월 15일 이전에 유효하던 본법의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12) 2005년 6월 25일 이전에 시작되었으며 본법 §2 조 (1)항 문장 1과 (3)항에 의거하여 별첨 1의 13.2.2.번에 따른 사업승인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실시할 때에는 본법이 적용된다. §2 조 (1)항 문장 1과 (3)항에 의한 절차로서 별첨 1의 3.15 번, 13.1 번 에서 13.2.1.3 번까지, 13.3 에서 13.18 까지 그리고 17 번 사업의 승인을 위해 중요하며 2010년 3월 1일 이전에 시작되었다면 지금까지 [본법이 재편되기 이전의] 유효한 법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완료한다.

(13) 본법 §2 조 (1)항 문장 1과 (3)항에 의거한 절차로서 별첨 1의 17.3 번 사업의 승인을 위해 중요하며 2010년 3월 1일 이후에 시작된 경우에만 본법을 적용한다.

별첨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목록

(출처: 연방법률공보 I 2010, 109-125;)

아래의 사업들은 본법 §3 조 (1)항 문장 1 에 따라 본법의 적용범위에 속한다. 그 중 일반적인 사전환경성검토나 개별적으로 입지관련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3c 조 (1)항 문장 1 과 2 의 규정을 적용한다.

범례:

Nr. = 사업유형번호
 사업 = § 3b, 1항 2절 및 § 3c 5절에서 규모와 용량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업유형

1번칸에 X = 환경영향평가의무
 2번 칸에 A = 개별사업에 대해 일반 사전환경성검토: § 3c조, 1항 참조
 2번 칸에 S = 사업지별 사전환경성검토: § 3c조, 2항 참조

번호	사업	1열	2열
1.	열생산, 광산, 에너지:		
1.1	연소장치에 연료를 투입하여 (예: 발전소, 난방설비, 가스터빈, 내연기관, 기타 연소장치)전기, 증기, 온수, 공정열 혹은 가열된 배기가스를 생산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으로 그에 속하는 연소시설의 열효율이,		
1.1.1	200 MW를 넘을 때,	X	
1.1.2	50 MW 에서 200 MW 사이		A
1.2	연소장치에 연료를 투입하여 (예: 발전소, 난방설비, 가스터빈, 내연기관, 기타 연소장치)전기, 증기, 온수, 공정열 혹은 가열된 배기가스를 생산하거나 운영하는 사업 중 굴착장치나 비상발전기를 가동하기 위한 시설을 제외하고, 아래의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1.2.1	석탄, 코크스, 페트롤코크스, 갈탄브리켓, 이탄브리켓, 이탄, 장작, 액성자연아스팔트, 난방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단 열효율 1MW~50MW 미만인 난방기름은 이에서 제외된다.		S
1.2.2	기체연료 (특히 코크스로가스, 갱내가스, 철강가스, LPG가스, 합성가스, 3차 채수採收시 발생하는 석유가스,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 바이오가스 등. 천연가스, 액화가스, 도시가스, 혹은 수소연료는 제외된다. 그 중,		
1.2.2.1	10 MW ~ 50 MW 미만,		S
1.2.2.2	자동연소시설이나 가스터빈시설 중 1 MW ~ 10 MW 미만,		S
1.2.3	난방오일, 디젤연료, 메탄올, 에탄올, 자연산 식물성기름 혹은 식물성기름 메틸에스터 (vegetable oil esters) 천연가스, 액화가스, 도시가스 혹은 수소연료 중		
1.2.3.1	20 MW에서 50 MW미만,		S
1.2.3.2	1 MW에서 20 MW미만인 내연엔진이나 가스터빈시설		S
1.2.4	1.2.1 이나 1.2.3에서 열거하지 않은 고체 혹은 액상연료 중		
1.2.4.1	10 MW ~ 50 MW 미만,		A
1.2.4.2	100 KW에서 1 MW미만;		S
1.3	(소멸)		
1.4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내연기관 혹은 가스터빈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아래와 같은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1.4.1	난방오일, 디젤연료, 메탄올, 에탄올, 자연산 식물성기름 혹은 식물성기름 메틸에스터 (vegetable oil esters), 코크스로가스, 갱내가스, 철강가스, LPG가스, 합성가스, 3차 채수採收시 발생한 석유가스,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 바이오가스, 천연가스, 액화가스, 도시가스, 수소연료 중 열효율		
1.4.1.1	200 MW이상,	X	
1.4.1.2	50 MW에서 200 MW까지,		A
1.4.1.3	1 MW에서 50 MW미만, 단. 굴착장치나 비상발전기를 가동하기 위한 내연엔진은 제외		S
1.4.2	1.4.1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연료 중 열효율이		
1.4.2.1	200 MW이상,	X	
1.4.2.2	50 MW~200 MW		A
1.4.2.3	1 MW ~ 50 MW미만;		S
1.5	(소멸)		
1.6	풍력단지의 설치와 운영: 발전기의 총고가 각각 50미터 이상이며,		
1.6.1	풍력발전기의 수가 20 기 혹은 그 이상,	X	
1.6.2	풍력발전기의 수가 6기 이상 20기 미만,		A
1.6.3	풍력발전기의 수가 3기 이상 6기 미만;		S
1.7	갈탄과 역청탄으로 브리켓 [주: 벽돌모양의 석탄덩어리]을 생산하는 시설의 설치나 운영;	X	
1.8	건식석탄가스생산시설 (석탄가스공장, 가스공장, 석탄가공공장)의 설치나 운영, 석탄 처리량이		
1.8.1	일간 500 t 혹은 그 이상,	X	
1.8.2	일간 500 t 미만, (숯가마는 제외);		A
1.9	석탄이나 역청질 혈암의 액화 / 가스화 공장의 설치나 운영 혹은 석탄 처리량이		
1.9.1	일간 500 t 혹은 그 이상,	X	
1.9.2	일간 500 t 미만;		A
1.10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시설의 설치 및 운영		
1.10.1	첫 번째 칸에 환경영향평가 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포집하는 경우,	X	
1.10.2	1.10.1 에 해당되지 않으나 연간 포집량 백오십만 톤 이상,	X	
1.10.3	연간 포집량 백오십만 톤 미만 ;		A
1.11	아래와 같은 시설의 설치와 운영		
1.11.1	8.4에 해당하지 않는 바이오가스생산시설로 그 가스생산량이,		
1.11.1.1	연간 이백만 입방미터 이상,		A
1.11.1.2	백이십만 이상 이백만 입방미터 미만,		S
1.11.2	바이오가스 가공, 가공량이		
1.11.2.1	연간 이백만 입방미터 이상,		A
1.11.2.2	연간 백이십만 이상 이백만 입방미터 미만;		S
2.	암석, 토양, 유리, 세라믹, 건축자재:		
2.1	채석장의 설치와 운영. 채석장 규모,		
2.1.1	25 ha 이상,	X	
2.1.2	10 ha 이상 25 ha 미만,		A

2.1.3	10 ha 미만이라도 폭약을 활용하는 경우		S
2.2	시멘트 혹은 시멘트벽돌의 생산시설의 설치와 운영. 그 중 생산량		
2.2.1	일간 1 000 t 이상,	X	
2.2.2	일간 1 000 t 미만;		A
2.3	석면의 생산시설의 설치와 운영;	X	
2.4	석면 혹은 석면제품의 가공 혹은 취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4.1	연간 생산량		
2.4.1.1	석면시멘트 완제품 20 000 t 이상	X	
2.4.1.2	석면 마찰재 완제품 50 t 이상,	X	
2.4.2	석면 투입량 200 t 이상의 제반 용도,	X	
2.4.3	위의 연간생산량 혹은 석면투입량보다 적은 경우;		A
2.5	유리생산공장의 설치와 운영, 재활용유리 포함, 유리섬유 생산 포함. 용해 용량		
2.5.1	연간 200,000 t 이상 혹은 플리트유리공정으로 판유리를 생산하는 경우 100,000 t 이상.	X	
2.5.2	위의 공정 중 일간 20 t이나 그 미만인 경우,		A
2.5.3	일간 100 kg 이상 20 t 미만, 의료용도 혹은 통신기술용도의 유리섬유제조공장은 예외;		S
2.6	세라믹제품의 생산시설의 설치와 운영 (점토봇기 시설 포함) 그 생산량이		
2.6.1	일간 75 t 이상일 때,		A
2.6.2	일간 75 t 미만, 가마의 용량이 4 m ³ 이상일 때, 혹은 제품밀도가 가마 1 세제곱미터 당 100kg 이상일 때, 단 굴뚝이 필요 없고 상시 이용하지 않는 전자 가마는 제외 .		S
2.7	미네랄 가공 공장의 설치와 운영. 미네랄 섬유공장도 이에 속함;		A
3.	철강, 철, 기타 금속 가공:		
3.1	용광로의 설치 및 운영, 혹은 광석가루를 가열하여 덩어리로 만드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X	
3.2	제련소 (철광석을 녹여 선철(銑鐵)을 생산하고 이를 가공하여 조강粗鋼을 제조하는 시설로 생산시설과 가공시설이 나란히 연계된 시설);	X	
3.3	주철 혹은 조강을 용해하거나 연속주조하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 정광精鑛이나 2차 원료를 쓰는 시설도 이에 포함된다. 그 중 녹이는 양이		
3.3.1	시간당 선철 혹은 철강 2,5 t 이상일 때,		A
3.3.2	시간당 철강 2,5 t 미만;		S
3.4	광석, 정광, 혹은 2차 원료에서 금속학적, 화학적 혹은 전해 프로세스를 통해 비철금속을 제련하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	X	
3.5	비철금속의 용해, 합금 혹은 정제 시설의 설치와 운영. 그 중 녹이는 양이,		
3.5.1	연간 100,000 t 이상,	X	
3.5.2	납과 카드뮴이 일간 4 t 이상일 때, 혹은 기타 비철금속은 일간 20 t 이상일 때, 다만 연간 100,000 t 미만,		A
3.5.3	납과 카드뮴은 일간 0,5 t 이상 4 t 미만 혹은 기타 비철금속은 일간 2 t 이상 20 t 이하일 때, 예외는 - 진공멜터, - 주석과 비스무트 혹은 정제된 아연과 알루미늄, 구리와 마그네슘으로 주조합금을 제조하는 시설,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형조형기나 다이캐스팅조형기에 속한 멜터 혹은 금형조형기나 다이캐스팅조형기로만 제조한 비금속철 주물 혹은 주물을 녹이는 공정, - 귀금속 혹은 귀금속으로만 이루어진 합금과 귀금속과 구리를 섞은 합금 주조시설 - 웨이브 땀납욕 - 열풍주석도금시설; 		
3.6	열간압연으로 철강을 가공하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		A
3.7	철주조, 텀퍼주조, 철강주조 시설의 설치와 운영; 액체금속의 주조량		
3.7.1	연간 200,000 t 이상,	X	
3.7.2	일간 20 t 이상,		A
3.7.3	일간 2 t 이상 20 t 미만;		S
3.8	용융조에서 금속표면을 도금하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 처리량,		
3.8.1	연간 100,000 t 이상의 원료,	X	
3.8.2	시간당 2 t 이상 연간 100,000 t 미만의 원료,		A
3.8.3	시간당 500 kg 이상 2 t 미만의 원료, 단 샌드치미르공법에 의한 스트립아연도금은 예외;		S
3.9	전해에 의한 혹은 화학공정에 의해 금속표면처리하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 도금욕의 용량,		
3.9.1	30 m ³ 이상,		A
3.9.2	불산 혹은 질산을 이용한 부식법을 적용하는 경우 1 m ³ 이상 30m ³ 미만;		S
3.10	구동장치 혹은 말뚝 박는 기계 등을 쓰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 구동장치와 기계의 타력이,		
3.10.1	20 Kilojoule 이상,		A
3.10.2	1 Kilojoule 이상에서 20 Kilojoule 미만;		S
3.11	폭발물을 써서 형태를 변형시키거나 평평하게 하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 샷당 폭발물 10kg;		A
3.12	조선소의 설치와 운영		
3.12.1	총 등록된 용량 100,000 톤의 선박제조,	X	
3.12.2	길이 20미터 이상의 금속선체나 선체부위의 제조 혹은 수리 중 아래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A
3.13	선로교통시설의 제조와 운영. 연간 600 기 이상의 기차를 제조하는 경우 (기차 1칸이란; 기관차; 0.5칸, 전차; 1칸, 동차; 1칸, 후미차; 1칸, 객차; 1칸 혹은 화물차; 3칸에 해당한다.);		A
3.14	자동차 및 자동차 엔진의 제조 및 조립시설의 설치와 운영. 연간 100,000 대 이상,		A
3.15	항공기 제조와 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연간 50기 이상 제조하거나 수리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단 일반 관리는 제외한다;		A
4.	화학제품, 의약품, 정유와 가공:		
4.1	화학물질과 화학적 변화에 의한 물질군의 생산 산업으로서, 여러 생산단위가 지리적으로 모여 있거나 기능적으로 모여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화학제품, - 무기화학제품, - 인, 질소 혹은 칼륨성분의 비료 (단순 혹은 복합비료), - 살충제와 살생물제의 전구물질前驅物質의 생산, 	X	

	- 화학적 혹은 생물학적 과정에 의한 기본약물의 생산 - 폭발성물질의 생산에 기여하는 시설, 단, 핵분열 혹은 방사선처리된 핵연료의 제조 등은 11.1 번에 따른다.		
4.2	화학변화를 통해 물질 혹은 물질군을 생산하는 산업시설의 설치와 운영, 단, 4.1, 10.1 은 제외한다. 핵분열 혹은 방사선 처리된 핵연료의 제조 등은 11.1 번에 따른다.		A
4.3	정유공장에서 석유를 증류, 정제 혹은 기타 가공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X	
4.4	온도 293.15 켈빈에서 최소한 0.01 킬로파스칼의 증기압을 가진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일간 25t 이상 투입하여 페인트나 코팅제 (광택제, 니스, 코팅, 유제페인트) 혹은 인쇄잉크를 생산하는 시설의 설치나 운영;		A
5.	플라스틱 표면처리:		
5.1	전해 혹은 화학적 공정을 통해 플라스틱표면처리하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 처리육의 용량이 30 m ³ 이상;		A
6.	목재, 셀룰로즈:		
6.1	목재, 밀짚, 혹은 유사한 섬유질을 이용하여 셀룰로즈를 생산하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	X	
6.2	종이나 판지를 생산하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 그 생산량이,		
6.2.1	일간 200 t 이상,	X	
6.2.2	일간 20 t 이상 200 t 이하;		A
7.	식품, 기호품 및 사료생산, 농산품:		
7.1	집중적 양계장의 설치와 운영. 그 중 평균 사육수수		
7.1.1	60,000 수 이상,	X	
7.1.2	40,000 수 이상에서 60,000 수 미만,		A
7.1.3	15,000 수 이상에서 40,000 수 미만;		S
7.2	집중적인 암탉 사육장의 설치와 운영, 그 중 평균 사육수수		
7.2.1	85,000 수 이상,	X	
7.2.2	40,000 수 이상 85,000 수 미만,		A
7.2.3	30,000 수 이상 40,000 수 미만;		S
7.3	기타 가금류 집중사육장의 설치와 운영, 그 중 평균 사육수수,		
7.3.1	85,000 수 이상,	X	
7.3.2	40,000 수 이상 85,000 수 미만,		A
7.3.3	30,000 수 이상 40,000 수 미만;		S
7.4	칠면조 집중사육장의 설치와 운영, 그 중 평균 사육수수		
7.4.1	60,000 수 이상,	X	
7.4.2	40,000 수 이상 60,000 수 미만,		A
7.4.3	15,000 수 이상 40,000 수 미만;		S
7.5	집중적 우사牛舍의 설치와 운영, 그 중 평균 사육수수		
7.5.1	800 수 이상,		A
7.5.2	600 수 이상 800 수 미만;		S
7.6	집중적 송아지축사의 설치와 운영, 그 중 평균 사육수수,		
7.6.1	1,000 수 이상,		A

7.6.2	500 수 이상 1,000 수 미만;		S
7.7	집중적 돈사의 설치와 운영, (돼지 몸무게 30 kg 이상) 그 중 평균 사육수수,		
7.7.1	3,000 수 이상,	X	
7.7.2	2,000 수 이상 3,000 수 미만,		A
7.7.3	1,500 수 이상 2,000 수 미만;		S
7.8	모돈母豚과 (새끼돼지 포함) 집중적 사육장 설치와 운영, (새끼돼지 몸무게 30 kg 미만) 그 중 평균 사육수수,		
7.8.1	900 수 이상,	X	
7.8.2	750 수 이상 900 수 미만,		A
7.8.3	560 수 이상 750 수 미만;		S
7.9	새끼돼지 집중적 사육장 설치와 운영, (새끼돼지 몸무게 10kg 이상 30 kg 미만), 그 중 평균 사육수수,		
7.9.1	9,000 수 이상,	X	
7.9.2	6,000 수 이상 9,000 수 미만,		A
7.9.3	4,500 수 이상 6,000 수 미만;		S
7.10	모피동물의 집중적 사육장 설치와 운영, 그 중 총 사육수수,		
7.10.1	1,000 수 이상,		A
7.10.2	750 수 이상 1,000 수 미만;		S
7.11	혼합 축사 (집중적) 설치와 운영. 그 중		
7.11.1	7.1.1, 7.2.1, 7.3.1, 7.4.1, 7.7.1, 7.8.1, 7.9.1 과 7.10.1에서 지정한 총사육수수에 미달하지만 각 총사육수기준에 대한 백분율의 합계가 100에 도달하거나 100 이 넘는 경우,	X	
7.11.2	7.1.2, 7.2.2, 7.3.2, 7.4.2, 7.5.1, 7.6.1, 7.7.2, 7.8.2, 7.9.2와 7.10.1 에서 지정한 총사육수수에 미달하지만 각 총사육수기준에 대한 백분율의 합계가 100에 도달하거나 100 이 넘는 경우,		A
7.11.3	7.1.3, 7.2.3, 7.3.3, 7.4.3, 7.5.2, 7.6.2, 7.7.3, 7.8.3, 7.9.3과 7.10.2 에서 지정한 총사육수수에 미달하지만 각 총사육수기준에 대한 백분율의 합계가 100에 도달하거나 100 이 넘는 경우;		S
7.12	(소멸)		
7.13	도살장의 설치와 운영. 그 중 도살량,		
7.13.1	일간 50 t (살아있을 때의 무게) 이상,		A
7.13.2	날짐승의 경우, 일간 0,5 t 이상 50 t 미만, 기타 동물은 일간 4 t 이상 50 t 미만;		S
7.14	동물기름을 원료로 하여 식용기름을 제조하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 (우유 생산 제외), 그 중 완제품 생산량,		
7.14.1	일간 75 t 이상		A
7.14.2	일간 75 t 미만, 단, 정육점에서 직접 생산한 동물성 기름으로 식용기름을 제조하며 그 양이 주간 200 kg 이하인 경우는 제외;		S
7.15	동물성 기름을 녹이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 그 중 완제품 생산량,		
7.15.1	일간 75 t 이상,		A
7.15.2	일간 75 t 미만, 단, 정육점에서 직접 생산한 동물성 기름으로 식용기름으로 가공하며 그 양이 주간 200 kg 이하인 경우는 제외;		S
7.16	고기저장식품 (통조림) 생산시설의 설치와 운영, 그 중 생산량,		
7.16.1	일간 75 t 이상,		A

7.16.2	일간 1 t 이상 75 t 미만;		S
7.17	채소저장식품 생산시설의 설치와 운영, 그 중 생산량이,		
7.17.1	일간 600 t 이상, 단 시설이 연간 90일 이하 연속 가동될 때,		A
7.17.2	일간 300 t 이상, 단 시설이 연간 90일 이하 연속가동될 때,		A
7.17.3	일간 10 t 이상 7.17.1 혹은 7.17.2에 열거된 생산량 미만이며 그에 따른 조건이 만족될 때, 단, 밀폐된 용기에서 제품을 소독 혹은 살균하는 시설은 제외;		S
7.18	동물성 재료를 이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단 동물성 재료를 가열하여 대량생산하는 경우에 한함,		A
7.19	동물성 재료의 폐기물을 처리 혹은 재활용하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 그 중 처리량이,		
7.19.1	일간 10 t 이상,		A
7.19.2	일간 10 t 미만;		S
7.20	가죽과 모피를 가공하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 그 중 완제품 생산량이,		
7.20.1	일간 12 t 이상,		A
7.20.2	일간 12 t 미만, 단, 도살장에서 나오는 짐승가죽, 모피 혹은 7.13.2번에서 나오는 가금류 깃털 4 t 미만을 가공하는 시설은 제외;		S
7.21	어분과 어유를 생산하는 시설의 설치 혹은 운영;	X	
7.22	맥아생산시설의 설치와 운영. 그 중 생산량이,		
7.22.1	일간 맥아 (kilned malt) 600 t 이상이며, 시설이 연간 90일 이상 연속가동되지 않을 때,		A
7.22.2	일간 맥아 (kilned malt) 300 t 이상이며 시설이 연간 90일 이상 연속가동되지 않을 때,		A
7.22.3	7.22.1번 혹은 7.22.2 에 명시한 일간 맥아 (kilned malt) 생산량에 미달하며 그에 딸린 조건을 충족할 때;		S
7.23	전분생산시설의 설치와 운영, 그 중 생산량이		
7.23.1	일간 600 t 이상이며 , 시설이 연간 90일 이상 연속가동되지 않을 때,		A
7.23.2	일간 300 t 이상이며 , 시설이 연간 90일 이상 연속가동되지 않을 때,		A
7.23.3	7.23.1번 혹은 7.23.2 에 명시한 일간 전분생산량에 미달하며 그에 딸린 조건을 충족할 때;		S
7.24	식물성기름을 생산하거나 정제하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 그 완제품 생산량이,		
7.24.1	일간 600 t 이상이며 시설이 연간 90일 이상 연속 가동되지 않을 때,		A
7.24.2	일간 300 t 이상이며 시설이 연간 90일 이상 연속 가동되지 않을 때,		A
7.24.3	추출용매를 활용하여 생산한 완제품 양이 7.24.1번 혹은 7.24.2 에 명시한 기준에 미달하며 그에 딸린 조건을 충족할 때, 단 추출용매의 활용량이 일간 1 t 이상;		S
7.25	사탕무와 원당을 재료로 설탕을 제조하거나 정제하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		A
7.26	맥주양조장의 설치와 운영. 그 생산량이		
7.26.1	일간 6,000 hl의 맥주를 생산하며, 시설이 연간 90일 이상 연속 가동되지 않을 때,		A
7.26.2	일간 3,000 hl의 맥주를 생산하며, 시설이 연간 90일 이상 연속 가동되지 않을 때,		A
7.26.3	일간 200 hl 이상이나, 7.26.1번 혹은 7.26.2번에서 명시한 양에 미달하며 그에 따른 조건이 충족될 때;		S
7.27	제과나 동물성재료를 이용한 시럽을 생산하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		

	우유는 제외. 그 생산량이		
7.27.1	일간 75 t 초과나 시럽,		A
7.27.2	리코리스제품으로 단제품이나 시럽을 일간 50 kg이상 75 t 미만을 생산;		S
7.28	식물성 재료를 이용하여 제과나 시럽을 생산하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 그 생산량이		
7.28.1	일간 600 t 이상이며 시설이 연간 90일 이상 연속 가동되지 않을 때,		A
7.28.2	일간 300 t 이상이며 시설이 연간 90일 이상 연속 가동되지 않을 때,		A
7.28.3	코코아 원료에서 코코아 덩어리를 생산하거나 코코아와 초콜릿 덩어리를 가열 가공하는 시설로서 생산량이 50 kg 이상이나 7.28.1 혹은 7.28. 2에 명시된 양에 미달하며 그에 따른 조건이 충족될 때;		S
7.29	우유, 유제품, 우유성분 생산시설의 설치와 운영 그 연간평균생산량이;		
7.29.1	일간 우유 200 t 이상,		A
7.29.2	5 t 이상 200 t 미만의 우유 혹은 분무건조기를 통해 유제품, 우유성분을 생산할 때;		S
8.	폐기물 등의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8.1	고체와 액체 혹은 용기에 담은 기체, 매립가스, 폐기물, 의 처리 혹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혹은 기타 연소성 기체를		
8.1.1	열처리를 통한 탈기공정, 플라즈마공정, 열분해공정, 연소 혹은 위의 공정을 혼합한 시설로서		
8.1.1.1	위험한 폐기물	X	
8.1.1.2	위험하지 않은 폐기물을 시간당 평균 3 t 이상 처리할 때,	X	
8.1.1.3	위험하지 않은 폐기물을 시간당 평균 3 t 미만 처리할 때,		A
8.1.2	내연기관을 통해 폐유 혹은 매립가스를 소각하는 시설로서 열효율이,		
8.1.2.1	50 MW 이상,		A
8.1.2.2	1 MW 이상 50 MW 미만,		A
8.1.2.3	1 MW 미만,		S
8.1.3	매립가스 혹은 기타 기체성분을 연소시키는 시설, 단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긴급 연소시는 제외;		S
8.2	연소장치에 목재를 투입하여 (예: 발전소, 난방설비, 가스터빈, 내연기관, 기타 연소장치) 전기, 증기, 온수, 공정열 혹은 가열된 배기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의 설치나 운영 및 연소시설로서 - 페인트칠, 도장, 혹은 코팅한 목재 혹은 - 합판, 파티클 보드, 섬유판 혹은 기타 접착재를 사용한 목재 및 그 폐기잔여물들, 단 목재방부제를 별도 활용하지 않았거나, 목재처리물질에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코팅제에 유기할로겐물질과 중금속이 함유되지 않은 목재를 태우는 시설 중 그 열효율이		
8.2.1	50 MW 이상,	X	
8.2.2	1 MW 이상 50 MW 미만;		S
8.3	위험 폐기물을 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 평균 처리용량이		
8.3.1	일간 10 t 이상,	X	
8.3.2	일간 1 t 이상 10 t 미만;		S
8.4	생물학적 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		
8.4.1	8.4.2번에서 열거하지 않은 비위험 폐기물, 평균 처리용량이		
8.4.1.1	일간 50 t 이상,		A

8.4.1.2	일간 10 t 이상 50 t 미만,		S
8.4.2	혐기성 소화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이 아닌 분뇨처리. 평균 처리용량이		
8.4.2.1	일간 50 t 이상,		A
8.4.2.2	일간 50 t 미만이며 연간 백만이십 세제곱미터 이상의 천연가스 생산;		S
8.5	위험한 폐기물의 화학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 특히 화학성분을 이용한 유탁액 파괴, 침전, 응집, 중화 혹은 산화;	X	
8.6	비위험 폐기물의 화학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 특히 화학성분을 이용한 유탁액 파괴, 침전, 응집, 중화 혹은 산화; 그 처리량이		
8.6.1	일간 100 t 이상,	X	
8.6.2	일간 50 t 이상 100 t 미만,		A
8.6.3	일간 10 t 이상 50 t 미만;		S
8.7	폐기물 임시보관시설의 설치와 운영, 단, 폐기물이 발생한 장소에서의 수집 및 임시 보관은 제외,		
8.7.1	철, 비철폐기물, 폐차. 총 보관량		
8.7.1.1	1 500 t 이상,		A
8.7.1.2	100 t 이상 1,500 t 미만,		S
8.7.2	위험한 슬러지, 총 보관량		
8.7.2.1	50 t 이상,		A
8.7.2.2	30 t 이상 50 t 미만;		S
8.8	(소멸)		
8.9	폐기물 일년 이상 장기 보관시설의 설치와 운영,		
8.9.1	위험폐기물		
8.9.1.1	일간 수용량 10 t 이상, 혹은 총수용량 150 t 이상,	X	
8.9.1.2	8.9.1.1 의 기준에 미달,		A
8.9.2	비위험성 폐기물		
8.9.2.1	일간 수용량 10 t 이상 혹은 총수용량 150 t 이상,		A
8.9.2.2	8.9.2.1 의 기준에 미달,		S
9.	물질과 혼합물질의 보관시설:		
9.1	293,15 켈빈 (섭씨 20도)에서 최소 101,3 킬로파스칼 이상의 절대압력과 가연공기를 포함한 용기내의 물질 혹은 혼합물, 혹은 이 물질과 혼합물로 된 제품 (연료 혹은 연료가스) 을 처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단, 아래 9.3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연가스보관소와 시설은 제외,		
9.1.1	모든 용기의 용량이 1,000 cm ³ 이하가 아닌 경우, 총 용량이,		
9.1.1.1	200,000 t 이상,	X	
9.1.1.2	30 t 이상 200,000 t 미만,		A
9.1.1.3	3 t 이상 30 t 미만,		S
9.1.2	모든 용기의 용량이 1,000 cm ³ 이하인 경우, 총 용량이,		
9.1.2.1	200,000 t 이상,	X	
9.1.2.2	30 t 이상 200,000 t 미만;		S
9.2	액체 보관시설의 설치와 운영. 9.3번에서 규정하는 시설은 제외.		
9.2.1	373,15 켈빈 혹은 그 이하 온도에서 인화점에 도달하는 액체. 그 용량이		
9.2.1.1	200,000 t 이상,	X	

9.2.1.2	50,000 t 이상 200,000 t 미만,		A
9.2.1.3	10,000 t 이상 50,000 t 이상,		S
9.2.2	294,15 켈빈 이하에 인화점이 있고, 일반기압 (101,3 Kilopascal)에서 293,15 켈빈 이상에서 끓는점에 도달하는 액체의 보관시설로서 용량이 5,000 t 이상 10,000 t 미만;		S
9.3	현재 유효한 『승인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조례 (연방유해물질방지법)』의 별첨 2 (본 항목에 해당하는 물질목록)에 열거된 물질 ³⁸⁾ 의 보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 중 보관량이		
9.3.1	200,000 t 이상,	X	
9.3.2	현재 유효한 『승인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조례 (연방유해물질방지법)』의 별첨 2의 제 4열 (9.3번 별첨 1에 속한 물질목록) 에 명시된 임계수량 이상에서 200,000 t 미만,		A
9.3.3	현재 유효한 『승인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조례 (연방유해물질방지법)』의 별첨 2의 제 4열 (9.3번 별첨 1에 속한 물질목록) 에 명시된 임계수량;		S
9.4	석유, 석유화학적, 화학적 물질의 보관 혹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9.1, 9.2 혹은 9.3에서 열거한 물질은 제외한다. 그 중 용량이		
9.4.1	200,000 t 이상,	X	
9.4.2	25,000 t 이상 혹은 200,000 t 미만;		A
10.	기타 산업시설:		
10.1	폭발물법에 의거한 폭발성 물질, 즉 폭발물, 가연성물질, 연료, 폭죽을 생산, 가공 혹은 처리하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 탄약과 기타 폭발물의 조합, 해체 등이 이에 속하며, 성냥이나 장소이동이 용이한 장전기 등을 소규모로 생산하는 수공업은 제외;	X	
10.2	폭발물법에 의거한 폭발성 물질의 복구, 혹은 폐기를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X	
10.3	생고무 혹은 합성고무의 가황加黃 처리 시설의 설치와 운영, 그 고무처리량이		
10.3.1	시간당 25 t 이상,		A
10.3.2	시간당 25 t 미만, 시간당 50 kg 미만, 혹은 가황처리하지 않은 고무만을 취급하는 시설은 제외;		S
10.4	직조의 세척, 표백, 머서가공 등의 준비처리시설이나 섬유, 직조의 염색시설의 설치나 운영, 그 처리량이		
10.4.1	일간 섬유 혹은 직조 10 t 이상,		A
10.4.2	일간 섬유 혹은 직조 염색량이 2 t 이상 10 t 미만이며 염색촉진제, 클램핑 프레임 등을 사용하는 경우, 단 고압처리하는 시설은 제외,		S
10.4.3	염소 혹은 염소화합물을 사용하여 섬유 혹은 직조 표백하는 시설로서 일간 처리량 10 t 미만;		S
10.5	연소엔진을 테스트하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 예외 - 폐쇄된 공간 내에서 롤러를 이용하여 행해지는 자동차 동력실험대 및 - 배기가스정화장치 혹은 디젤매연필터를 부착한 엔진을 테스트하는 시설. 총 연소율		
10.5.1	10 MW 이상,		A

10.5.2	300 KW 이상 10MW 미만;		S
10.6	가스터빈 혹은 엔진을 테스트하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 총 연소율이		
10.6.1	200 MW 이상,	X	
10.6.2	100 MW 이상 200 MW 미만,		A
10.6.3	00 MW 미만;		S
10.7	차량의 테스트 트랙의 설치와 운영;		A
11.	원자력에너지:		
11.1	원자력연료의 생산, 가공, 처리, 핵분열 혹은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고정된 시설, 혹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핵연료 분열을 위한 고정시설의 경우 철거계획, 시설이나 시설의 일부에 대한 안전한 밀폐 및 철거계획 포함, 제외: 연속 열부하가 최고 1 KW를 넘지 않는 고정된 핵연료 시설; 시설 혹은 일부시설의 폐쇄, 안전한 밀폐와 철거를 위한 개별적 방안은 본법 § 3e조, 1항 1번에서 말하는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X	
11.2	원자력폐기물의 안전한 보관 및 폐기처리장의 건설과 운영;	X	
11.3	11.1과 11.2에서 말하고 있는 시설 이외의 시설을 짓거나 운영하는 것과 핵연료재처리 혹은 고준위폐기물의 처리, 혹은 폐기핵연료를 십년이상 보관하려는 목적으로만 건설되는 시설, 혹은 다른 지역에서 산출된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려는 목적으로 건설되는 시설;	X	
11.4	11.1, 11.2에서 언급된 외의 시설로 11.3에도 명시되지 않은 시설, 시설의 건설과 운영, 혹은 방사성폐기물의 보관, 처리 시설 중, 폐기물의 방사능활동양이 임계수량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그 이하는 원자력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에 의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때 위험방지를 위한 대책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A
12.	매립지:		
12.1	순환경제 및 폐기물법에 근거한 위험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설과 운영;	X	
12.2	순환경제 및 폐기물법에 근거한 비위험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설과 운영; 제외; 아래 12.3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활성 폐기물 매립지 매립량		
12.2.1	일간 10 t 이상 혹은 총용량 25,000 t 이상,	X	
12.2.2	일간 10 t 미만, 혹은 총용량 25,000 t 미만;		S
12.3	순환경제법에 근거한 불활성폐기물 매립지의 건설과 운영;		A
13.	하천을 이용하는 물경영시설의 건설과 운용:		
13.1	폐수처리시설 중,		
13.1.1	유기적으로 오염된 폐수로서,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5일 간 9 000 kg/d 이상, 혹은 무기적으로 오염된 폐수량 두시간당 4 500 m ³ 이상 (냉각수 제외),	X	
13.1.2	유기적으로 오염된 폐수로서, 5일간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600 kg/d 이상, 혹은 무기적으로 오염된 폐수량 2시간당 900 m ³ 이상 4 500m ³ 미만 (냉각수 제외),		A
13.1.3	유기적으로 오염된 폐수로서, 5일간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20 kg/d이상 600 kg/d 미만, 혹은 무기적으로 오염된 폐수량 2시간당 10 m ³ 이상 90m ³ 미만 (냉각수 제외),		S
13.2	양어장의 건설과 운영		
13.2.1	하천, 호소 혹은 해안에 설치하여 외부 물질이 하천, 호소 혹은		

	해안에 유입되는 시설로서 연간 어획량		
13.2.1.1	해당 연방주법에 의해 그리 규정된 경우 1,000 t 이상,	X	
13.2.1.2	13.2.1.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00 t 이상,		A
13.2.1.3	50 t 이상 100 t 미만;		S
13.2.2	독일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연간 어획량		
13.2.2.1	2 500 t 이상,	X	
13.2.2.2	500 t ~ 2 500 t,		A
13.2.2.3	250 t 이상 500 t 미만;		S
13.3	지하수 채취, 굴착 혹은 지하수 함양을 위해 지표수를 침투시키는 시설, 연간 유량이 각각,		
13.3.1	천만. m ³ 이상,	X	
13.3.2	100,000 m ³ 이상 천만m ³ 미만,		A
13.3.3	5 000 m ³ 이상 100,000m ³ 미만, 지하수의 영향을 받는 생태계가 하천이용으로 침해받을 수 있을 때,		S
13.4	물 공급을 위한 심층 굴착;		A
13.5	농업경제를 위한 수자원이용 프로젝트 (13.3, 13.18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로서 관수 혹은 배수를 포함, 연간 유량,		
13.5.1	100,000 m ³ 이상,		A
13.5.2	5,000 m ³ 이상 100,000m ³ 미만이며 지하수의 영향을 받는 생태계가 하천이용으로 침해받을 수 있을 때,		S
13.6	댐건설 혹은 기타 영구 저수, 유수 시설. 이 때 저수 용량이		
13.6.1	천만 m ³ 이상이면	X	
13.6.2	천만 m ³ 미만이면;		A
13.7	하천유역의 물을 다른 지역에 유입할 때, 단 상수도는 예외.		
13.7.1	- 물부족현상을 보충하기 위해 물을 타 지역으로 유입시키는 경우, 연간 유출량이 일역 m ³ 이상일 때, - 유출시키는 지역의 평균 물흐름이 장기간 연 20억 m ³ 를 넘고 그 중 5 %를 타지역으로 유출할 때,	X	
13.7.2	13.7.1의 수치에 미달할 때;		A
13.8	하천의 운하화 사업과 물길수정 작업;		A
13.9	내륙수로수송을 위한 항구건설,		
13.9.1	1,350 t 이상이 정박가능,	X	
13.9.2	1,350 t 미만;		A
13.10	해운과 해양사업을 위한 항구건설,	X	
13.11	해운, 해양사업을 위한 부두시설, (여객선은 제외)		
13.11.1	1,350 t 이상이 정박가능	X	
13.11.2	1,350 t 미만;		A
13.12	어항과 마리나를 비롯한 기타 항구의 건설 혹은 기타 항만시설;		A
13.13	홍수방지용 제방이나 둑 (13.16의 규정 제외);		A
13.14	수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A
13.15	하천과 호소의 미네랄성분 채굴;		A
13.16	각 연방주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해안보호를 위한 제반 시설 (예. 방조제, 방파제 등 기타 해안보호시설)로서 해안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시설, 시설의 보수 관리는 여기서 제외 된다;		A
13.17	간척사업, 각 연방주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A
13.18	기타 13.1에서 13.17에서 규정하지 않으며 물경제법에 의해 관리되는		

	건설사업,		
13.18.1	13.18.2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업		A
13.18.2	개천, 용수로, 배수로, 유수못이나 연못 등에 대한 소규모의 자연화 방안, 즉 직강시설 제거, 도시나 마을의 도로변 도랑의 이전, 소규모의 직강화, 하천 자갈톱 이전;		S
14.	교통도로사업:		
14.1	연방수로의 건설,		
14.1.1	13.6.1과 13.7.1 에서 지정한 사업	X	
14.1.2	13.6.2, 13.7.2, 13.8, 13.12 와 13.13 (홍수 배수관리시설과 무관하게)의 사업;		A
14.2	연방수로로서 선박		
14.2.1	1,350 t 이상이 다닐 수 있는 수로,	X	
14.2.2	1 350 t 미만을 위한 수로;		A
14.3	연방고속도로 혹은 연방도로의 건설, 단 1975년 11월 15일, 유럽협약에서 정의한 국제 주도로에 대한 정의와 부합하는 경우;	X	
14.4	4차선 이상의 연방도로, 연장 5 km 이상의 신축;	X	
14.5	기존의 도로를 확장, 혹은 이동하여 4차선 이상의 연방도로로 개축하며 연장 10km 이상일 때,	X	
14.6	기타 연방도로의 건설;		A
14.7	철길과 이를 위한 전선 및 그에 속한 부속시설의 건설;	X	
14.8	철도의 기타 부속, 관리시설, 특히 통합유통시설 혹은 기차터미널 등, 14.7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A
14.9	자기부상열차노선과 그에 속한 부속시설의 건설;	X	
14.10	기타 선로대중교통을 위한 노선과 그 부속시설의 건설;		A
14.11	여객운송법에 의거한 전차, 고가도시철도, 지하철 혹은 모노레일과 그에 속한 부속시설, 관리 운영시설의 건설;		A
14.12	국제 민간 항공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1944년 체결된 『시카고협약』의 정의에 따른 비행장의 건설 (아넥스 14) 이에 따른 활주로가		
14.12.1	1,500 m 이상,	X	
14.12.2	1,500 m 미만;		A
15.	광산과 이산화탄소 영구 저장시설:		
15.1	광산사업과 그의 시행을 위해 요구되는 사업계획, 연방광산법 § 57c 조 1번을 근거로 발령한 조례에만 의거.		
15.2	이산화탄소저장시설의 건설과 운영 및 폐기;	X	
16.	경지정리:		
16.1	경지정리법에 의거하여 건설하는 공동시설 혹은 공공시설;		A
17.	임업과 농경사업		
17.1	연방삼림법에 의거한 숲조성사업		
17.1.1	삼림면적 50 ha 이상	X	
17.1.2	삼림면적 20 ha 이상 50 ha 미만,		A
17.1.3	삼림면적 2 ha 이상 20 ha 미만;		S
17.2	연방삼림법에 의거하여 숲의 용도를 전환하기 위한 벌목		
17.2.1	10 ha 이상의 삼림,	X	
17.2.2	5 ha 이상 10 ha 미만의 삼림,		A
17.2.3	1 ha 이상 5 ha 미만의 삼림;		S
17.3	황무지나 자연에 가까운 녹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전환하는 프로젝트		
17.3.1	20 ha 이상,	X	

17.3.2	10 ha 이상 20 ha 미만,		A
17.3.3	1 ha 이상 10 ha 미만;		S
18.	건설사업:		
18.1	휴양단지, 호텔 건설, 혹은 그에 준하는 관광과 휴양단지의 건설을 위하여 건설법전 § 35조에 의거 현 도시외곽지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18.1.1	총 침대 수 300 이상 혹은 총 객실 수 200 이상,	X	
18.1.2	총 침대 수 100 이상 혹은 300 미만, 혹은 총 객실 수 80 이상 200 미만;		A
18.2	연중 내내 운영하는 캠핑장 건설을 위하여 건설법전 § 35조에 의거 현 도시외곽지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주차수		
18.2.1	200 이상,	X	
18.2.2	50 이상 200 미만;		A
18.3	휴양공원 건설을 위하여 건설법전 § 35조에 의거 현 도시외곽지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지 규모가		
18.3.1	10 ha 이상,	X	
18.3.2	4 ha 이상 10 ha 미만;		A
18.4	주차장 건설, 건설법전 § 35조에 의거 현 도시외곽지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 규모가,		
18.4.1	1 ha 이상,	X	
18.4.2	0,5 ha 이상 1 ha 미만;		A
18.5	산업단지의 건설을 위해 건설법전 § 35조에 의거 현 도시외곽지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며, 토지이용령 § 19조 2항에서 허용한 대지면적 혹은 확정된 면적이		
18.5.1	100,000 m ² 이상,	X	
18.5.2	20,000 m ² 이상 100,000 m ² 미만;		A
18.6	쇼핑몰이나 대형상점 혹은 토지이용령 § 11조 3항 문장1에서 지정한 대규모 상가의 건설, 건설법전 § 35조에 의거 현 도시외곽지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허용된 연면적이		
18.6.1	5,000 m ² 이상,	X	
18.6.2	1,200 m ² 이상 5,000m ² 미만;		A
18.7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건설법전 § 35조에 의거 현 도시외곽지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령 § 19조 2항에서 허용한 대지 면적이		
18.7.1	100,000 m ² 이상,	X	
18.7.2	20,000 m ² 이상 100,000m ² 미만		A
18.8	18.2에서 18.7의 사업의 유형이 각각 사전환경성검토의 기준치에 도달, 혹은 초과하며 이를 건설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변경 혹은 보완 되어야 할 때;		A
18.9	1985년 유럽공동체가 발표한 특정한 공공 혹은 개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디렉티브 85/337/EEC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r. L 175/40)와 1997년 발표한 개정안 97/11/EG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r. L 73 S. 5)을 바탕으로 제정한 국가법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 (역주: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사업)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건설에 근거를 마련했거나 지구단위계획이 계획확정결정을 대체 할 때;		

19.	전선과 기타 시설:		
19.1	에너지경제법에 의거한 고압송전선의 건설과 운영		
19.1.1	전선연장 15 km 이상, 전압이 220 kV 이상,	X	
19.1.2	전선연장 15 km 이상, 전압이 110 kV 이상 220 kV 미만,		A
19.1.3	전선연장 5 km이상 15 km 미만, 전압이 110 kV 이상,		A
19.1.4	전선연장 5 km이상 15 km 미만, 전압이 110 kV 이상;		S
19.2	에너지경제법에 의거한 가스공급선의 설치와 운영, 단, 사업장의 경계를 넘지 않는 공급선은 제외.		
19.2.1	총연장 40 km 이상, 관지름 800 mm 이상,	X	
19.2.2	총연장 40 km 이상, 관지름 300 mm 이상 800 mm 미만,		A
19.2.3	총연장 5 km 이상 40 km 미만, 관지름 300 mm 이상,		A
19.2.4	총연장 5 km 미만, 관지름 300 mm 이상,		S
19.3	본법 § 21조 4항 7절에 의거 수질오염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배관의 설치와 운영, 아래의 경우 제외됨, - 사업장의 경계를 넘지 않는 경우, - 위험 물질을 다루는 시설의 부속품들, 혹은 - 공간적으로 공정관계로 가깝게 연계된 시설들과 서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었으나 교통수단에 의해 연계된 시설들, 배관의 총 연장이		
19.3.1	40 km 이상,	X	
19.3.2	2 km 이상 40 km 미만, 관지름 150 mm 이상,		A
19.3.3	2 km 미만, 관지름 150 mm 이상,		S
19.4	19.3에 속하지 않은, 액상가스를 수송하기 위한 배관시설의 설치와 운영, 사업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시설은 제외.		
19.4.1	40 km 이상, 관지름 800 mm 이상,	X	
19.4.2	40 km 이상, 관지름 150 mm 이상 800 mm 미만,		A
19.4.3	40 km 이상, 관지름 150 mm 이상 800 mm 미만,		A
19.4.4	2 km 미만, 관지름 150 mm 이상;		S
19.5	19.3에 속하지 않으며, 에너지경제법에 의한 에너지시설로서 19.2에 속하며, 비액성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시설의 설치와 운영, 사업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시설은 제외.		
19.5.1	40 km 이상, 관지름 150 mm 이상 800 mm 이상,	X	
19.5.2	40 km 이상, 관지름 300 mm 에서 800 mm 까지,		A
19.5.3	5 km에서 40 km 이상, 관지름 300 mm 이상,		A
19.5.4	5 km 미만, 관지름 300 mm 이상;		S
19.6	19.2와 19.5에 해당하지 않으며 화학 물질법 § 3a조에서 말한 물질을 수송하기 위한 배관시설의 설치와 운영, 하수관과 사업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시설과 해당 물질들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의 부품들은 제외, 배관의 총연장이		
19.6.1	40 km 이상, 관지름 800 mm 이상,	X	
19.6.2	40 km 이상, 관지름 300 mm 이상 800 mm 미만,		A
19.6.3	5 km에서 40 km 이상, 관지름 300 mm 이상,		A
19.6.4	5 km 미만, 300 mm 이상;		S
19.7	1-10 번까지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나 사업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증기 혹은 온수를 수송하기 위한 배관시설의 설치와 운영, (증기관, 온수관)		
19.7.1	사업장 외부의 배관 총연장 5 km 이상,		A
19.7.2	사업장 외부의 배관 총연장 5 km 이상;		S

19.8	19.6 에 해당되지 않으며 한 지역의 경계를 벗어나 물을 수송하는 상수도관의 설치와 운영, 관의 총연장		
19.8.1	10 km 이상,		A
19.8.2	2 km 이상 10 km 미만;		S
19.9	저수조의 설치 및 운영, 저수용량		
19.9.1	천만 m ³ 이상,	X	
19.9.2	2백만 Mio. m ³ 이상 천만 m ³ 미만,		A
19.9.3	5,000 m ³ 이상 2백만 Mio. m ³ 미만,		S
19.10	이산화탄소저장법에 의거 이산화탄소 수송관의 설치와 운영, 사업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시설은 제외,		
19.10.1	40 km 이상, 관지름 800 mm 이상,	X	
19.10.2	40 km 이상, 관지름 150 mm 에서 800 mm 까지,		A
19.10.3	2 km 이상 10 km 미만, 관지름 150 mm 이상,		A
19.10.4	2 km 미만, 관지름 150 mm 이상.		S

별첨 2 환경영향평가 중 사전환경성검토의 기준

(원문출처: BGBl. I 2010, 126.)

§3c, 문장 1, 2 와 §3e, 3f 및 별첨 2 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1. 사업의 성격

각 사업의 성격은 특별히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 1.1. 사업의 규모,
- 1.2. 토양, 물, 자연생태기능과 경관을 이용하거나 변형시키는가의 여부,
- 1.3. 폐기물 발생,
- 1.4. 환경오염과 공해,
- 1.5. 사업에 활용된 소재와 기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2. 사업대상지

사업이용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아래와 같은 이용 및 보호기준을 적용하고 타 사업과의 누적효과를 감안하며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2.1. 기존의 토지이용유형, 특히 주거, 휴양, 농업 및 임업, 어업지, 기타 경제용지, 공공용지, 교통지 및 공급시설지 (용도기준에 의한 평가),
- 2.2. 물, 토양, 자연생태와 경관 (질적 기준),
- 2.3. 아래와 같은 보호구역과 각 보호구역의 유형 및 보호의 범위 등에 대비하여 자연자산과 환경매체가 영향에 견딜 수 있는 한계치 평가:
 - 2.3.1. 연방자연보호법 §7조 (1)항 8번에 의거하여 지정된 Natura 2000-구역,

- 2.3.2. 연방자연보호법 §23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자연보호구역으로 2.3.1과 중복되지 않은 구역,
- 2.3.3. 연방자연보호법 §24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자연공원과 국립자연기념물로서 2.3.1과 중복되지 않은 구역,
- 2.3.4. 연방자연보호법 §§25와 26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생물권보전지역과 경관생태보호구역으로서 2.3.1과 중복되지 않은 구역,
- 2.3.5. 연방자연보호법 §28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천연기념물,
- 2.3.6. 연방자연보호법 §29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경관요소 (가로수길 포함),
- 2.3.7. 연방자연보호법 §30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비오름,
- 2.3.8. 수자원보호법 §51조에 의거한 수자원보호구역, §53조, (4)항의 용출수보호구역, §73조 (1)항에 의거한 오염위험지역 및 §76조에 의거한 범람지역,
- 2.3.9. 유럽연합에서 지정한 환경기준치를 넘어서 지역,
- 2.3.10.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특히 도심, 특히 연방공간계획법 § 2, 2항 2번에 의거한 중심가,
- 2.3.11. 기록된 문화재, 발굴지 혹은 각 연방주의 문화재청이 의미 깊은 유적지로 지정한 지역.

3. 예측한 환경영향의 특징

사업이 미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위의 1번과 2번에서 설명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되; 특히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3.1.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범위와 해당 주민들의 범위,
- 3.2. 대상지 경계를 넘는 성격의 환경영향
- 3.3. 환경영향의 과중함과 복합성,
- 3.4. 영향을 미치게 될 확률,
- 3.5. 영향이 미치는 기간, 빈도, 복구가능성.

별첨 3 전략환경평가 대상 계획과 프로그램

(원문출처: BGBl. I 2010, 127.)

아래의 계획이나 프로그램은 본법 §3, (1a)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범례:		
Nr.	=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번호
계획 혹은 프로그램	=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유형

번호	대상 계획 혹은 프로그램
1.	전략환경평가 실시 의무가 있는 계획/프로그램 (환경영향평가법 제14b조 (1)항 번호1에 의거)

1.1	연방차원의 교통종합계획 ³⁹⁾ 과 이에 따른 집행계획 포함.
1.2	항공교통법 §12조 (1)항 ⁴⁰⁾ 에 준하여 수립되는 확충계획이 항공교통법 §8조 (1)항과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상당히 벗어나는 경우 ⁴¹⁾ . [공항건설에 대한 조항]
1.3	수자원경제법 §75조 혹은 동법 §75조 (6)항에 의거 유사한 계획을 재수립하는 절차 중 홍수위험지구를 대상으로 리스크메니지먼트계획을 수립할 때.
1.4	수자원경제법 §82조에 의거하여 하천이용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이때 이용 가능한 하천에 속하는 강은 총 10개로서 도나우강, 라인강, 엘비강 등 대형하천만이 이에 속함.]
1.5	연방국토계획법(Raumordnungsgesetz) §8조에 의거하여 국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6	연방국토계획법(Raumordnungsgesetz) §17조 (2)항과 (3)항에 의거하여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⁴²⁾
1.7	소멸
1.8	건설법전 §§6조 및 10조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건설기본계획 [이에 해당하는 계획은 토지이용계획 (FNP)과 지구단위계획]
1.9	수자원경제법 §45h조 ⁴³⁾ 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조치프로그램 [해수질 보호를 위한 조치]
1.10	에너지경제법 §12e조 ⁴⁴⁾ 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연방에너지수급계획
1.11	네트워크설치가속법 §54조와 5조 ⁴⁵⁾ 에 의거하여 연방전문계획을 수립할 때
1.12	유럽공동체에서 발령한 하천보호법 [91/676/EC] 제5조 1항에 근거, 1991년 12월 12일부로 발효된 "농업폐수로 인한 하천질소오염 방지 지침 (2008년 11월 21일 개정됨)" 에 의거하여 국가시행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1.14	에너지경제법 §17a조 ⁴⁶⁾ 에 따라 수립되는 오프쇼어 연방전문계획
1.15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소 선발에 관한 법 ⁴⁷⁾ §14조 (2)항에 의해 지상에 폐기물처리장소를 선정할 때
1.16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소 선발에 관한 법 §17조 (2)항에 의해 지하폐기물처리장소를 선정할 때
2.	기본방향설정을 위해 실시하는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법 §14b조 (1)항 번호2)
2.1	연방유해물질방지법 §47d조에 의거하여 소음방지계획
2.2	연방유해물질방지법 §47조 (1)항에 의거하여 공기청정계획
2.3	순환경제 및 폐기물처리법 §21조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계획
2.4	순환경제 및 폐기물처리법 §16조 (3)항 문장4 2번에 의거 일반폐기물처리계획의 재수립
2.5	순환경제 및 폐기물처리법 §30조에 의거 일반폐기물처리계획수립 및 독성폐기물, 알트라스텐, 배터리, 충전기, 포장폐기물 등 특수폐기물처리계획
2.6	순환경제 및 폐기물처리법 §33조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폐기물저감프로그램
2.7	유럽연합의 지역개발지원금, 사회지권금, 유럽권결속지원금 (교통네트워크 등), 유럽연합의 해양 산업 및 어업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집행프로그램 및 유럽연합 농업지원금에서 후원하는 낙후지역개발계획

별첨 4 전략환경평가 시 개별사전환경성검토기준

(원문출처: BGBl. I 2010, 128)

전략환경평가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참고로 한다.

1. 해당계획이나 프로그램의 성격과 특징들

- 1.1. 해당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설정하는 기본 틀의 범위;
- 1.2. 해당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타 계획과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1.3. 해당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환경과 건강, 특별히 지속가능한 개발에 주는 의미;
- 1.4. 해당 계획이나 프로그램과 관련 있는 환경과 건강에 대한 문제점;
- 1.5. 독일연방과 유럽연합의 환경법률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해당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가지는 의미.

2. 아래의 항목에 대해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영향 받는 지역에 대한 특징,

- 2.1. 환경영향이 있을 것인지의 여부, 영향을 미치는 기간, 빈도수 및 회복가능성;
- 2.2. 환경영향의 누적효과 및 지역경계를 벗어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의 여부;
- 2.3.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 (예: 사고위험)에 대한 리스크;
- 2.4. 환경영향의 공간적 범위;
- 2.5. 영향 받는 지역의 특수한 자연환경, 문화유산, 토지이용정도에 대한 민감도 예측, 환경기준과 지표를 토대로 한 평가;
- 2.6. 별첨 2의 2.3번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 [보호구역]

역주:

- 1) **연방법률공보 Bundesgesetzblatt (BGBl.)** 법령공포를 위해 연방법무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공보公報. 독일기본법 제82조 1항 1절에 의거 BGBl에 발표되지 않은 법은 효력이 없다. 1871년 독일제국의 건립과 함께 제국법령지로 출발하였으며 1951년부터 I,과 II로 나뉘어 발행하고 있다. BGBl I은 국제법 (각 연방주 간, 국가 간의 협정, 규정)을 제외한 모든 법률, BGBl II에서는 국제법을 공포한다. BGBl III 도 존재하는 데 이 지면에서는 1963년까지 유효했던 서독연방법을 원문 그대로 발행하고 있다.
연방법률공보는 1998년부터 무료로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으며 1949년 이후에 발행된 모든 법령을 구독할 수 있다. 단 인터넷에 발표된 것은 공식적이 아니며 종이에 인쇄된 것만이 공보로 취급된다.
- 2) 2010년 2월 24일 환경영향평가법이 크게 개정되어 재편집되었다. 이 때 개정된 항목은 한글로만 된 번역본의 목차 참조.
- 3) 연방법률공보 I 734 제10조는 전자행정 및 이에 관련된 규정에 대한 법으로써 2013년 7월 25일 제정 공포되었으며 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에도 그 내용이 반영되었다.
- 4) 법령 인용법: "I 94"는 연방법률공보 I부 94쪽 (누적페이지수) 을 말함. 검색할 때는 "BGBl I 94" 의 방식으로 입력
- 5) 역주: I 205는 1990년 2월 12일 공포된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이다. 제 14조 (Artikel 14)는 법령 발효에 관한 항목이며 그 중 (2)항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다루고 있다. 해당 원문은 아래와 같다:
(2)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은 § 3조의 별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2번에 해당하는 사업 [원자력에너지관련사업]에 대해서는 핵에너지법 § 7조의 4항 3절과 § 7a의 2항의 규정이 발효된 시점 이후에 적용한다. 핵에너지법의 해당항목은 핵발전사업에 대한 승인절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3)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은 § 3조의 별첨 1번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방유해물질방지법BImSchG § 10조 10항의 규정이 발효된 시점 이후에 적용한다. 연방유해물질방지법의 해당항목은 동법에 저촉되는 사업의 승인절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 6) 연방대표회의 (Bundesrat), 연방상원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표회의의 의원들은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의 중앙정부에서 대표가 참가하여 모이는 연방헌법기관이므로 상원으로 번역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연방대표회의는 독일연방의 16개국(주)에서 대표를 세워 입법, 연방의 운영과 유럽공동체에 관련된 사항들을 맡아 의논하고 연방주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16개 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기관이다. 헌법, 기본법, 재정예 관한 입법, 행정에 영향을 주는 기타 입법과정은 연방대표회의의 동의가 필요하다.
- 7) 독일 법조항의 명칭/표기법은 아티클Artikel과 파라그라프Paragraph두 가지가 있다:
 - **Artikel** : 국제법, 기본법, 공법, 유럽공동체의 법령, 지침 등dp 적용되며 아티클은 다시 § 파라그라프로 나뉜다.
 - **§ (Paragraph, 파라그라프)** : 일반적으로 모든 법, 계약 등의 조항을 §로 표시한다. 각 파라그라프는 다시 항 (Absatz, 단락), 문 (Satz), 번호와 문자로 나뉘어 구분된다.
- 8) 선행계획은 상위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독일계획체계에서는 상하의 위계보다는 선행, 후행의 개념이 적용된다.
- 9) 전략환경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프로그램 중에서는 국토계획 등, 큰 틀을 만들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은 궁극적으로 각 계마인대의 토지이용에 관한 법을 만드는 절차라고 볼 수 있다. 본문에서는 수립에 그치는 계획/프로그램과 입법하는 계획/프로그램을 구분하여 말하고 있다.
- 10) **환경정보법 Umweltinformationsgesetz** 참조: 환경정보법은 1994년 7월 16일 제정공포 되었으며 2004년 12월에 개정되었으며 유럽공동체 디렉티브 90/313/EC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또 다시 유엔유럽경제위원회 (UNECE)에서 만든 국제적 환경조약, 즉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 (이루선언) 10대 원칙 중 공공참여조항 public participation에 근거한다. 1994년 법에는 요청에 의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었으나 2004년

개정안으로 인해 환경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은 중요한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환경정보개념도 확장되어 환경, 건강, 안전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와 정책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기관 뿐 아니라 비국가기관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때 해당기관은 환경담당기관에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기관이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시에는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04년 개정법). 이는 국민들이 “환경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진정한 환경영향은 다음 세대에 명료하게 드러나므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고소인이 없기 때문에 각종 환경기관이나 단체들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위험성을 사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적인 정보 요구가 확실한 경우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정보, 산업체의 기술 기밀정보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출처: 고정희, 독일의 환경정보법. 미발표원고 2013)

- 11) 2010년 3월 1일 부로 소멸. 소멸된 항목은 각 연방주별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기준을 세운다는 규정이다. (출처: buzer.de) 개정된 법에서는 별첨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기준을 직접 세웠다.
- 12) 사업의 유형에 따라, 연방유해물질방지법, 원자력법, 교통법, 수자원경제법 등의 해당법이 우선 적용된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1 참조.
- 13) **행정절차법 §73조 (3a)항**: 참여를 요청받은 기관은 제시된 기간 내에 계획확정기관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다. 이때 의견제시기간은 삼개월을 넘지 못한다. 이후에 제출된 의견은 그 내용이 계획확정기관이 사전에 알고 있거나, 알만한 사항이거나 혹은 계획확정을 위해 중요한 사안일 경우 이를 감안해야 한다. 그 외의 경우에도라도 감안될 수 있다.
- 14) 독일연방과 각 연방주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반 법률은 국제법의 범주에 속한다.
- 15) 공공참여 : 과거에는 ‘시민참여 혹은 주민참여(Bürgerbeteiligung)’라 했으나 2004년부터 『공공참여』로 명칭을 바꿨으며 이는 해당지역의 주민들 뿐 아니라 각종 연대나 협회 등 단체들에게 이의 제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임.
- 16) 행정절차법 §74조는 계획확정 및 계획승인에 관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17) 독일은 9개의 이웃 국가 (덴마크, 네덜란드,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므로 국가 간의 환경영향이 큰 과제로 취급된다.
- 18) **건설법전 §34조와 §35조**는 승인가능한 사업에 대한 규정들이며 §34조는 도시구역내부에 행하는 사업을 §35조는 도시외곽지역의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 §34조 (4)항은 “각 게마인데가 조례를 발령하여 도시구역과 외곽지대를 정의하고 외곽지역에 존재하는 도시적 구조를 도시부분구역으로 확정하며, 외곽에 분산된 개별 용지들이 인근 도시구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5조 (6)항은 바이오에너지시설 건설에 관한 규정이다.
- 19) **연방자연보호법 §36조** 문장1의 2번: “행정기관의 업무결정시 감안하거나 준수해야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34조 (1)항에서 (5)항까지를 적용한다.” §34조 (1)항에서 (5)항은 허용된 프로젝트와 금지된 프로젝트에 관한 규정이며 원문은 아래와 같다. (1) 모든 프로젝트는 승인 또는 집행 이전에 Natura 2000 지역의 보호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의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Natura 2000 지역이 본법 20조 (2)항에서 말하는 보호지역내에 속하고 보호목표와 그에 따른 조례와 규정 등에 Natura 2000을 포함한 보호목표가 충분히 감안되어 있을 경우 이에 근거하여 환경영향을 평가받는다. 사업수행자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2) 평가의 결과 환경영향이 지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3)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사회,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모든 점에서 공공의 이익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고, 프로젝트의 목표와 부합될 수 있는 공간적 대안과 훼손을 감소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때. (4) 프로젝트 대상지의 자연적인 생활공간이 파괴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는 안보와 방어의 목적이나 아니면 환경을 위해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한다고 판단될 때에만 허용된다. 그 외의 경우 (3)항의 1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연방환경부의 전문가회의의 감성서를 받아야 한다. (5) 그럼에도 (3)항과 (4)항에 의거하여 프로젝트를 시행하려는 경우 Natura 2000 네트워크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연구하여 제시해야 한다. 담당 기관은 연방환경부의 전문가회의에 그 방안을 보고해야 한다.

- 20) **건설법전 §13조**는 절차간소화에 대한 규정이며 13a조는 도심지내의 재생사업에 대한 규정이다.
- 21) **국토계획법 §9조**는 환경평가에 대한 항목이며 그 중 2항은 환경평가 예외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위의 조항이 만들어졌다.
- 22)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이상의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조사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23) 필요 이상의 상세한 정보는 역할분배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각 절차에 맞는 내용과 규모를 미리 설정하여 그에 부합되게 서술한다.
- 24) **환경향소법 §3조**는 환경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연합이나 단체의 자격부여 등에 관련된 항목이다. 외국의 환경단체도 조건에 부합되면 연방환경청에 신청하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25) 모든 계획과 프로그램은 각 위계에 따라 담당기관에 독립적으로 수립하며 해당 지역의 의회에서 통과시킨다. 상위 기관의 인준이나 승인은 불필요하다. 상위기관에게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다. 상위기관은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지 검토하며 하자가 있을 시에 거부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채택사실을 인정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에 그친다.
- 26) **연방고속도로법 § 16조** 1항은 계획에 관한 규정으로서 "연방교통건설도시계획부는 각 해당 연방주의 계획부처와 협의 하에 연방고속도로계획과 노선계획을 수립한다. 각 지역의 외곽순환도로의 신축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외곽순환도로는 연방도로의 일부로서 지역 통과도로를 폐쇄하기 위해 건설한다."
- 27) **연방수로법 § 13조** 1항 역시 계획에 대한 규정으로서 "연방교통건설도시계획부는 각 해당 연방주의 계획부처와 협의 하에 연방수로계획과 노선계획을 수립한다. 노선을 계획함에 있어 이에 영향을 받는 공공의 이익과 환경침해를 상호조정과정에서 감안해야 한다."
- 28) **항공교통법 §6조 1항**: "공항, 착륙장 및 글라이딩장은 승인이 있어야만 건설 또는 운영할 수 있다. 공항의 승인 절차는 계획확정절차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 15조 1항 2절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승인 시에는 조건과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 29) **국토계획법 §15조**에서 국토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절차 (Raumordnungsverfahren, ROV)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공간영향검토절차라고 볼 수 있다. 공간이용에 큰 의미를 가지는 프로젝트 (예: 고속도로노선계획, 대형상가건설계획 등)을 계획하기에 앞서 해당 프로젝트가 지역적, 공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하고 전문가의 감정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공간영향평가절차는 대형프로젝트를 연방국토계획, 주단위 국토계획 혹은 광역국토계획 등에 비추어 이에 부합되는 지를 검토하는 것이며 대형 프로젝트 들을 상호 조절하여 균형 잡힌 국토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거치는 절차이다. 환경영향평가와는 달리 직접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나 다음 단계로 수립되는 계획절차와 승인절차에서 감안해야 한다.
- 30) **국토계획법 §15조 (1)항** 문장3에 의하면 선정된 입지와 노선대안 등이 평가의 대상이다.
- 31) **국토계획법 §9조**는 환경평가에 대한 조항으로서 국토계획을 수립할 때 감안해야 하는 환경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으로부터 마지막 사업승인단계까지 모든 환경평가의 절차는 거의 유사하며 구체성과 상세도에서만 차이가 난다.
- 32) **건설법전 §2조 (4)항**에서 건설계획에 따른 환경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1조 (6)항 7번과 §1a조에 의거하여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환경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환경평가에서는 예상될 환경영향의 정도를 예측하여 **환경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한다; 본법의 별첨 1에 따른다. 개발계획도면에 명시할 환경영향의 정도와 범위는 각 지자체가 결정하여 지정한다. 환경평가는 일반적으로 인정받은 방식에 따라 수행하며 현재 통용되고 있는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환경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은 승인 절차에서 감안되어야 한다. 계획대상지에 대한 환경보고서가 이미 광역적 공간이용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 혹은 지구단위지역계획 등에서 작성된 경우, 중복을 피하고 추가적인 지대한 환경영향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다."

- 33) **연방광산법 §57a조**에서 계획확정절차와 그에 따라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 34) 계획확정절차는 **행정절차법 §§72조 에서 78조** 의해 실시되는 행정절차로서 특별한 건설사업에 적용된다. 계획 확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은 아래의 13분야로 나뉜다. 이들 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계획확정절차 상에 실시된다.:
1. 연방고속도로, 연방도로 (연방교통도로법)
 2. 연방수로 (연방수로법)
 3. 철도교통시설 (철도법)
 4. 항공교통시설 (항공교통법)
 5. 순환경제 및 폐기물처리법에 의한 매립지
 6. 도시철도 (여객운송법)
 7. 광산사업 중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의무가 있는 사업 (연방광산법)
 8. 하천사업, 제방건설 등 (수자원경제법)
 9. 방사선폐기물 처리시설 (원자력법)
 10. 경지정리를 위해 도로, 길, 수로 등의 공공시설을 건설, 변화, 이전 혹은 철거하는 사업 (경지정리법)
 11. 고압송전시설 (전압 110kV이상), 가스공급시설 (관지름 평균 300mm 이상) (에너지경제법)
 12. 오프쇼어 풍력발전에너지 송전네트워크 (네트워크건설촉진법)
 13. 배타적 경제구역 내의 시설 (해양시설법)
- 35) 계획확정절차는 시간을 오래 요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간소화하여 기관과 공공참여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허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1996년 이후 동독의 인프라시설을 될수록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절차가속법"을 만들었다. 타인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거나 개인이 사유재산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참여기관과는 사전협의를 통해서 조율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 36) **연방유해물질방지법 §51a**는 시설안전관리를 위한 위원회 조직에 대한 규정이다.
- 37) **건설법전 §244조**는 유럽연합법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다.
- 38) **연방유해물질방지법 별첨 2**에는 위의 9.3 항목에 해당하는 30개의 물질명과 기준치가 명시되어 있다. 목록은 별첨 참조
- 39) 연방교통종합계획은 연방에서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모든 교통수단과 노선, 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를 계획하고 이에 대한 투자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약 10~15년 간격으로 연방교통건설부에서 수립하며 지금까지 1973, 1980, 1985, 1992, 2003년에 각각 수립되었으며 현재 2015를 수립중이다.
- 40) **항공교통법 §12조 (1)항**은 공항건설계획에 관한 항목이다.
- 41) **항공교통법 §8조 (1)항과 (2)항**은 공항건설에 대한 계획확정절차 (1) 및 계획허가 (2)에 대한 조건 등에 대한 항목이다.
- 42) 연방차원의 국토종합계획은 "법"으로만 존재하고 계획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토종합계획의 목표와 과제는 „지속가능한 공간이용"이며 이를 위해 §1조 (2)항에서 8항목의 프레임과 총 49항목의 공간이용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2008년도 개정된 연방국토계획법 §§17조에서 25조까지 항목을 추가하여 연방전체의 향방이 걸려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한해 연방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북해와 발트해의 offshore wind-energy park 조성에 한함.)
- 43) **수자원경제법 §45h조**: §§45a - 45i 까지는 해양경제에 대한 항목들이며 그 중 §§45h조는 해수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원칙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해수질보호를 위한 조치프로그램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44) **에너지경제법 §12e조**: §§ 11 - 16a조는 전력네트워크 공급사업에 대한 규정들이다. 그 중 §12e조는 연방전력수급계획에 관한 항목이며 특히 오프쇼어 풍력에너지와 이의 공급을 위한 네트워크 설치 및 공급계획 및 담당기관

의 역할과 과업범위 등을 조절하고 있다.

- 45) **네트워크설치가속법 §4조와 5조**는 오프쇼어 풍력단지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전국에 공급하기 위한 네트워크 설치에 대한 연방전문계획에 대한 항목이다.
- 46) **에너지경제법 §17a조**는 배타적경제수역에 설치하는 오프쇼어 풍력발전시설계획에 대한 항목으로 일명 오프쇼어 전문계획이라고도 한다. 입지선정, 해상노선, 발전시설, 기술, 환경영향평가 등 오프쇼어 풍력단지계획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47) **방사선편기물 처리장소선발에 관한 법 (Standortauswahlgesetz – StandAG)**: 처리장소 선발전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